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66호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0호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 계획 고시(서해)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1호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 계획 고시(남동)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2호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3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정비구역 해제 고시 1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4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2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4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5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63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3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72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수정) 공고 4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7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4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75호 공시송달 공고 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84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5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85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6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8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8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8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9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9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9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98호 공시송달 공고(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9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27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95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212호 공인등록 공고 98

회 람								
--------	--	--	--	--	--	--	--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55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00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56호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13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5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58호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6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2호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3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3호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4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4호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5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5호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66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6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7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8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3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9호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28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40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38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41호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8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43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73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44호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8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45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90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25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굴포천) 30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0호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 계획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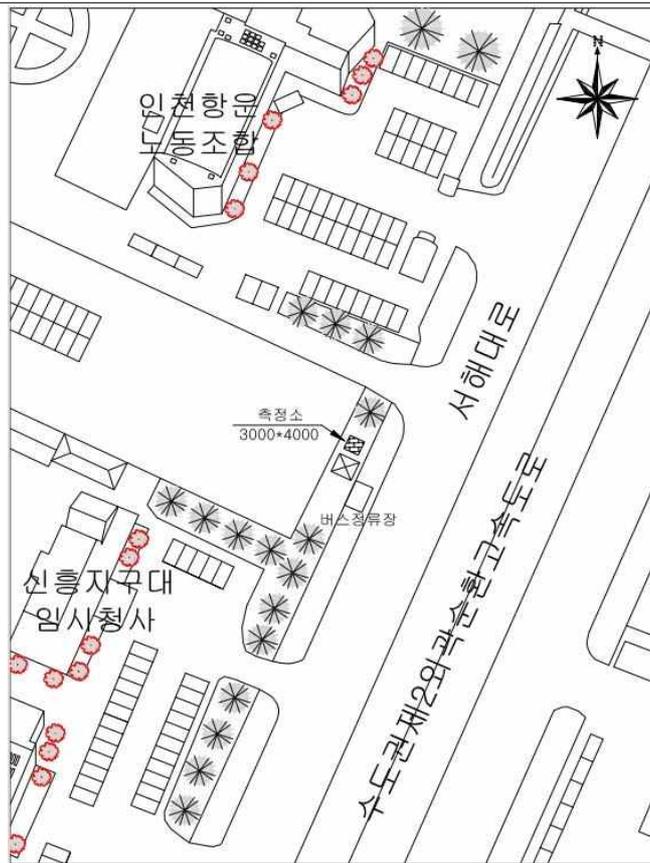
2019. 8. 13.

인천광역시장

1. 고시내용 : 서해 도로변대기측정소 신규 설치 계획
2. 설치목적
 - 가. 도로변 대기질 상시 측정 및 실시간 측정 자료 모니터링
 - 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일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파악
3. 신규 설치 시기 : 2019년 11월 중
4. 측정소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 7가 1-110
 - 나. 면적 : 허가면적(16m²)
5. 측정항목 :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₃),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일사량
6. 측정방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대기환경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 측정망 위치도 및 배치도



중구 서해대로



서해 도로변대기측정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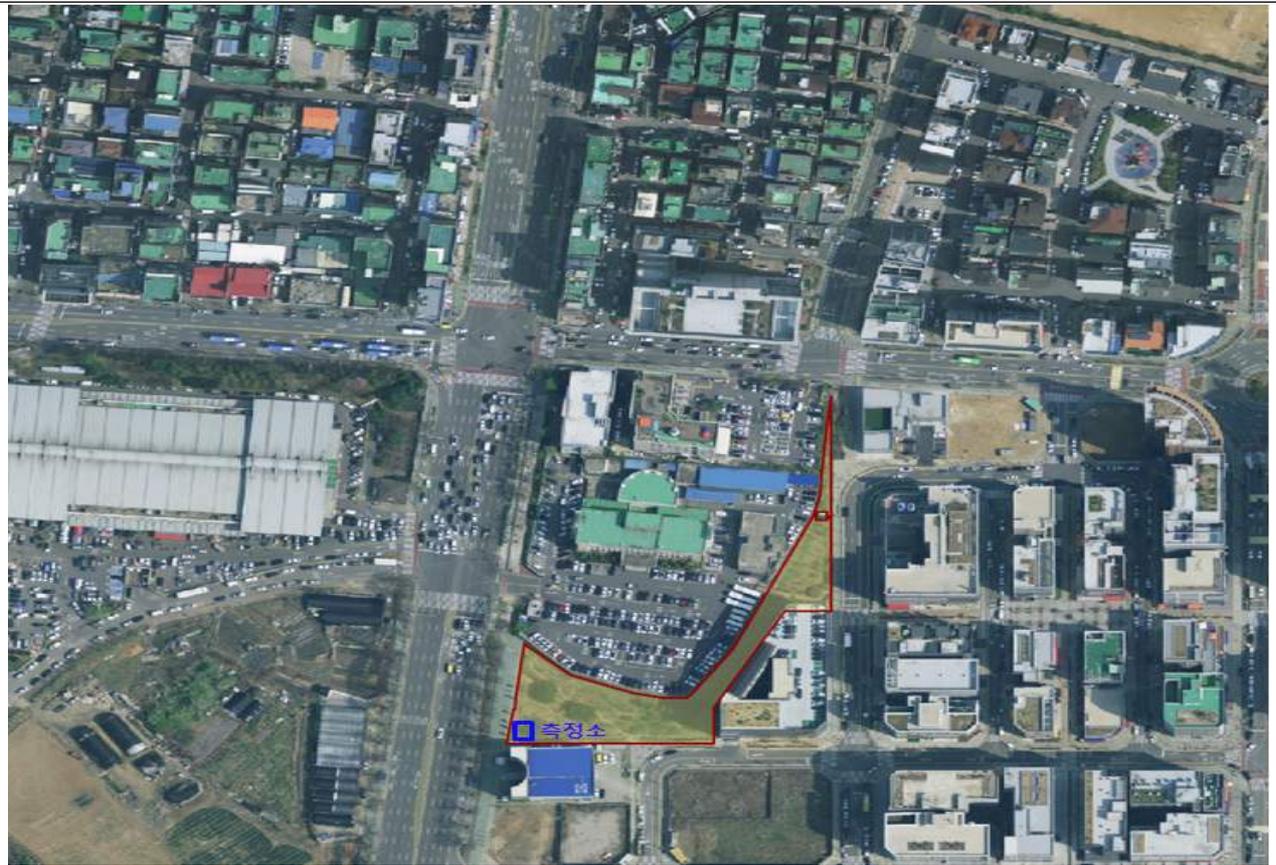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 계획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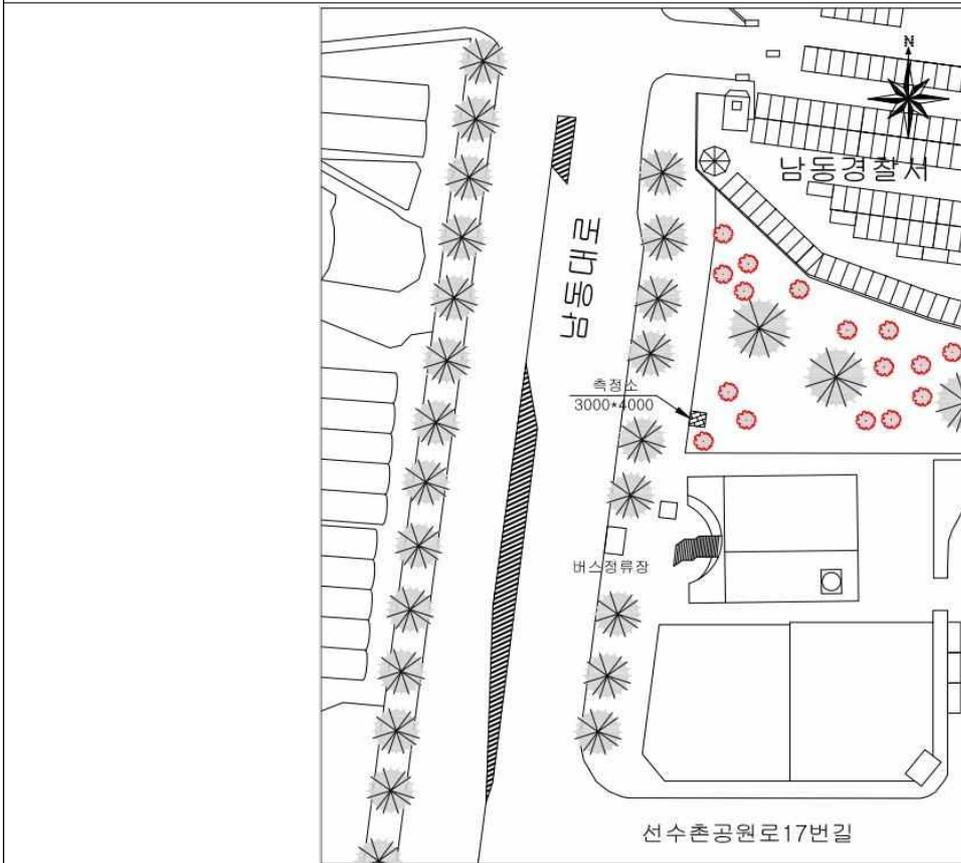
2019. 8.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시내용 : 남동 도로변대기측정소 신규 설치 계획
2. 설치목적
 - 가. 도로변 대기질 상시 측정 및 실시간 측정 자료 모니터링
 - 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일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파악
3. 신규 설치 시기 : 2019년 11월 중
4. 측정소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4
 - 나. 면적 : 허가면적(16m²)
5. 측정항목 :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₃),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일사량
6. 측정방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대기환경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 측정망 위치도 및 배치도



남동구 남동대로



남동 도로변대기측정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2호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 포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명 칭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나. 위 치 : 남동국가산업단지(논현, 남촌, 고잔동 일원)
- 다. 면 적 : 9,504,045.7m²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 가. 기본방향
 - 핵심역량 집중 및 산업고도화 유도
 - 신성장유망산업의 전략적 도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 기존 주력 핵심업종 및 유망 유치업종의 전략적 집적화 도모
 - 남동국가산업단지 특성유지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도시공간구조에 부합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 공원·녹지공간의 확충 및 정비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나. 목 적

- 기존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신성장유망산업 유치로 산업구조 개편
-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계획 기본구상 제시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차장, 공원·녹지, 도로 등]

3. 재생사업의 시행자

-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나. 성 명 : 인천광역시장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가. 시행기간 : 2015년 ~ 2024년
 나. 시행방법 : 재정비방식

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 해당없음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계획

- 가. 기본방향
- 사업대상지 내 업종분포는 전통제조업 위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기존산업 정비 및 육성, 성장유망산업 유도를 위한 업종재배치 계획 필요
 - 업종재배치 시 기존 조업 중인 업체의 업종 이전을 지양하여 이전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분산되어 있던 산업을 집적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계획
 - 주변지역 및 환경영향, 기존 조업 중인 업종을 고려하여 관련 및 유사업종의 특화를 위한 4개 지구로 구분하여 장기계획에 맞춰 특화 업종으로 관리되도록 유도

나. 유치업종계획

○ 지구별 특화업종

구 분	주요 내용	산 업 분 류
신성장 산업 지구	뷰티 산업 / 첨단 자동차·항공 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융합·부품 산업지구	전자·부품 산업 /기계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지식·문화 산업지구	지식·정보산업 /문화산업 (가구공방 등)	C32. 가구제조업 J58. 출판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1.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존산업 육성지구	기존 존치산업의 고도화, 청결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 제조업 집적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 가능한 업종

주)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따라 해당 업종을 유도하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허용업종에 대해서도 입주 가능

○ 입주 제한업종

구 분	입주제한업종
공해유발 및 용수다소비 업종	○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레미콘, 아스콘 업종 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산업단지 내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폐기물 업종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폐기물, 축산폐기물 등)

주) 공해유발 업종 및 용수다소비 업종 중 환경관련 인허가기관과 사전협의 시 환경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가 가능

다. 업종재배치계획

○ 신성장 산업지구

-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인 뷰티산업, 첨단자동차·항공산업 등 신성장 업종의 집적화 유도
- 조성예정 중인 구조고도화사업 반영을 통해 관련 업종의 활성화 및 연계개발 유도

○ 융합·부품 산업지구

-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한 전자, 부품, 기계산업 등 관련 업종 집적화 유도
- 기존산업육성지구 및 송도국제도시 내 대학 및 연구시설, 남동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육성

○ 지식·문화 산업지구

- 승기천변으로 가구공방 등 문화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을 배치하여 산업단지 주변 주거단지의 인구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및 노후산업단지 이미지 탈피

○ 기존산업 육성지구

- 기존 존치산업의 고도화, 청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존치산업 집적화
- 전통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뿌리산업을 주력으로 한 존치산업 육성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합 계	5,916,003.3	100.0	-
신성장 산업지구	1,158,735.6	19.6	뷰티, 첨단자동차·항공 산업 등
융합·부품 산업지구	1,590,214.2	26.9	전자, 부품, 기계 산업 등
지식·문화 산업지구	1,074,787.8	18.2	지식·정보 산업, 문화산업 등
기존산업 육성지구	2,092,265.7	35.3	전통제조업 집적화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9,504,045.7	100.0	
산업시설용지	5,916,003.3	62.2	복합용지 163,000m ² 포함
상업시설용지	97,992.4	1.0	
지원시설용지	107,289.4	1.2	복합용지 163,000m ² 포함
공공시설용지	3,382,760.6	35.6	
도 로	1,512,971.5	15.9	
철 도	42,971.4	0.5	
공 원	262,438.3	2.8	주차장 중복결정 14,060m ² 포함
녹 지	131,126.5	1.4	
공공공지	58,966.4	0.6	
광 장	3,255.0	0.0	
하 천	513,961.6	5.4	
유수지	806,794.4	8.5	
하수도	9,571.6	0.1	
수질오염방지시설	2,277.8	0.0	
전기공급설비	10,101.3	0.1	
가스공급설비	13,758.5	0.1	
주차장	14,566.3	0.2	

나. 복합용지계획

○ 총 량 : 326,000m²

○ 전환가능지역

구 분		내 용
기본 조건	주간선도로 인접지	○ 주간선(광로)도로변 100m 이내
	역세권 주변지	○ 역세권 반경 250m 이내
선택(예외) 조건	승기천 주변지	○ 승기천변(승기천로) 접한 필지
	재생추진협의회 인정지역	○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인정 지역

○ 시행방안 : 공모 및 제안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반영 및 시행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1) 주차장

연번	시설명	면적(m ²)	비 고(주요 사업내용)
1	노외주차장	14,060	○노외(지하)주차장 신설 [남동근린공원 중복결정]

2) 공 원

연번	시설명	면적(m ²)	비 고(주요 사업내용)
2	공 원	21,180	○공원 신설 [완충녹지→공원]

3) 녹 지

연번	시설명	면적(m ²)	비 고(주요 사업내용)
3	연결녹지	27,018	○연결녹지 변경 [완충녹지→연결녹지]

4) 도 로

연번	시설명	길이(m)	비 고(주요 사업내용)	
4	도로환경개선	4,850	○ 보도정비(A=58,200m ²) ○ 담장철거 및 특화(L=4,010m) ○ 포켓쉼터 조성(A=2,600m ²) ○ 버스쉼터 조성(15개소)	○ 도로모퉁이 특화(8개소) ○ 자전거쉼터 조성(8개소) ○ 교량하부 환경개선(A=1,375m ²) ○ 진출입부 야간조명 특화(16개소)

5) 용수공급계획

- 생활 및 공업용수 60,004m³/일은 수산정수장(Q=623,000m³/일)에서 공급되고 있는 연수배수지 및 푸른송도배수지(증설예정)에서 공급 받는 것으로 계획

구 분	일최대급수량(m ³ /일)	비고
합 계	60,004	
생활용수	10,923	
공업용수	49,081	

6) 오·폐수처리계획

-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54,981m³/일은 승기하수처리시설 (Q=275,000m³/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구 분	계획일최대 오·폐수량(m ³ /일)	비고
합 계	54,981	
오 수	10,170	
폐 수	44,811	

7) 우수처리계획

-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시설기준」을 적용. 사업지구 내 관로를 통해 승기천 및 우수지를 통해 인근 바다로 배제토록 계획

8) 폐기물처리계획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연간 발생 폐기물은 총 54,277.5톤/년으로, 생활폐기물은 16,098.0톤/년, 사업장폐기물은 38,179.5톤/년으로 추정됨
- 대상지 내 생활폐기물은 인천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 처리토록 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계획

구 분	합 계		매립 (톤/년)	소각 (톤/년)	재활용 (톤/년)	기타 (위탁처리) (톤/년)
	발생량 (톤/년)	구성비 (%)				
생활폐기물	16,098.0	29.7	2,566.8	4,508.4	9,022.8	-
사업장폐기물	38,179.5	70.3	100.1	12.8	229.5	37,837.1
배출시설폐기물	341.2	0.6	100.1	11.6	229.5	-
지정폐기물	37,838.3	69.7	-	1.2	-	37,837.1
합 계	54,277.5	100.0	2,666.9	4,521.1	9,252.4	37,837.1

9) 에너지공급계획

○ 산업시설의 연간 열 수요량은 7,755,048Gcal/년으로 예측됨

구 분	부지면적 (㎡)	연료 원단위 (Mcal/㎡·년)	직간접열비율(%)		열수요(Gcal/년)		
			직접열	간접열	직접열	간접열	계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면적 포함)	5,753,003.3	1,348	45.5	54.5	3,528,547	4,226,501	7,755,048

○ 산업지원시설의 열 수요량은 138.51 Gcal/hr로 예측됨

구 분	연면적 (㎡)	난방율 (%)	단위열부하 (Kcal/㎡·hr)		열수요(Gcal/hr)		
			난방	급탕	난방	급탕	계
상업용지	979,924.0	70	98	5	67.22	3.43	70.65
복합용지	652,000.0	-	-	-	32.61	5.92	38.52
주거시설	391,200.0	80	49	15	15.34	4.69	20.03
상업시설	130,400.0	70	86	5	7.85	0.46	8.31
지원시설	130,400.0	84	86	7	9.42	0.77	10.19
지원시설용지	375,512.9	84	86	7	27.13	2.21	29.34
합 계	2,007,436.9	-	-	-	126.96	11.56	138.51

주)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10) 전력공급계획

○ 재생사업지구 전력공급은 추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

○ 산업시설의 최대전력수요는 507,286kW로 예측됨

구 분	부지면적 (㎡)	전력 원단위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가동시간 (hr)	평균부하 (kW)	부하율 (%)	개별최대부하 (kW)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면적 포함)	5,753,003.3	482	2,772,948	7,200	385,132	0.584	659,472
총 최대부하(kW)	659,472kW ÷ 1.3(부등률)						507,286

○ 산업지원시설의 연간 전력수요는 3,468kW로 예측됨

구 분	규모(m ²)	단위부하(VA/m ²)	전력부하(kVA)	수용률(%)	수요부하(kVA)
상업용지	979,924.0	95	93,093	86%	80,060
복합용지	652,000.0	-	37,164	-	21,281
주거시설	391,200.0	30	11,736	35%	4,108
상업시설	130,400.0	95	12,388	86%	10,654
지원시설	130,400.0	100	13,040	50%	6,520
지원시설용지	375,512.9	100	37,551	50%	18,776
도로 및 주차장	1,527,537.8	0.25	382	100%	382
공원 및 광장	265,693.3	0.25	66	100%	66
합 계	-	-	168,256	-	120,565
변압기용량	$120,565\text{kVA} \div 1.3(\text{부동률}) = 92,742\text{kVA}$				
최대부하	$92,742\text{kVA} \times 0.9(\text{역률}) = 83,468\text{kW}$				

주)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11) 통신공급계획

○ 통신수요량은 총 30,548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구 분	규모(m ² , 세대)	원단위	수요량(회선)	비고
산업시설용지	5,590,003.3	0.025회선/10m ²	13,975	
상업시설용지	979,924.0	0.03회선/10m ²	2,940	연면적
복합용지	-	-	5,457	
산업시설	163,000.0	0.025회선/10m ²	408	
주거시설	3,556세대	1.2회선/세대	4,267	세대수
상업시설	130,400.0	0.03회선/10m ²	391	연면적
지원시설	130,400.0	0.03회선/10m ²	391	연면적
지원시설용지	375,512.9	0.03회선/10m ²	1,127	연면적
공공시설 및 여유량	-	-	7,050	산업, 주거, 기타시설 수요량의 30%
합 계	-	-	30,548	

주) 상업용지 용적률 1,000%, 복합용지 용적률 400%, 지원시설 용적률 350%로 적용하여 연면적 산정

8.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분	추진사항	주요내용	추진주체
1단계	기반시설의 확충	○ 주차장, 공원·녹지, 도로 등 설치 및 정비	공공
2단계	민간주도 업종고도화	○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자력개발 유도 ○ 복합용지 개발 및 업종고도화	민간
3단계	재생사업 활성화	○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	공공+민간

9.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지구단위 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증) 9,504,045.7	9,504,045.7	

10.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	증) 9,504,045.7	9,504,045.7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등 지정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적(m ²)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9,504,045.7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9,504,045.7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	9,504,045.7

-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 생략)

12.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78)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13. 관계도면 : 게재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3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E정비구역 해제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91호(2008.05.26.), 제2010-139호(2010.05.24.)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미추E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해제 정비구역 명칭

- 미추 E 정비구역

2.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사업구분	위치	면적(m ²)	구역지정(고시일)
당초	미추 E 정비구역	재개발	미추홀구 주안동 247-2번지 일원	19,89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변경	해 제				

3.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 추진위원회가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4.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 대한 사항

-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단,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지 않음.

5. 지형도면: 별도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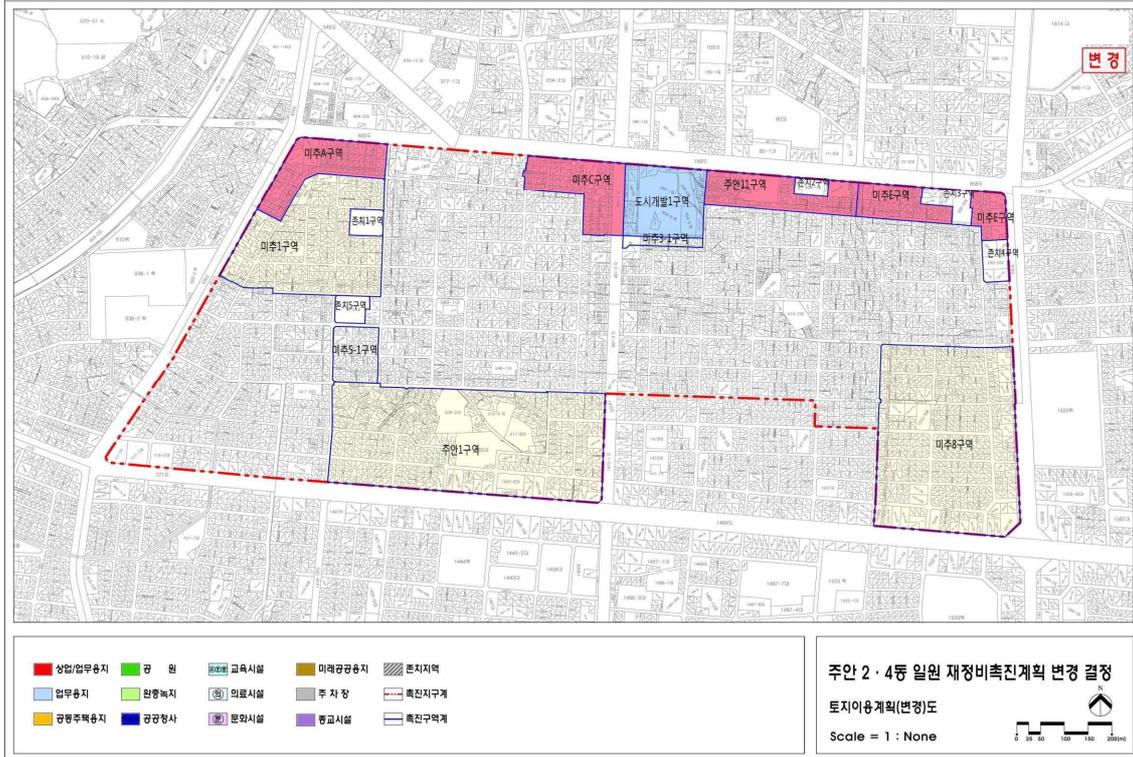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재생정책과, 032-440-4468) 및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7947)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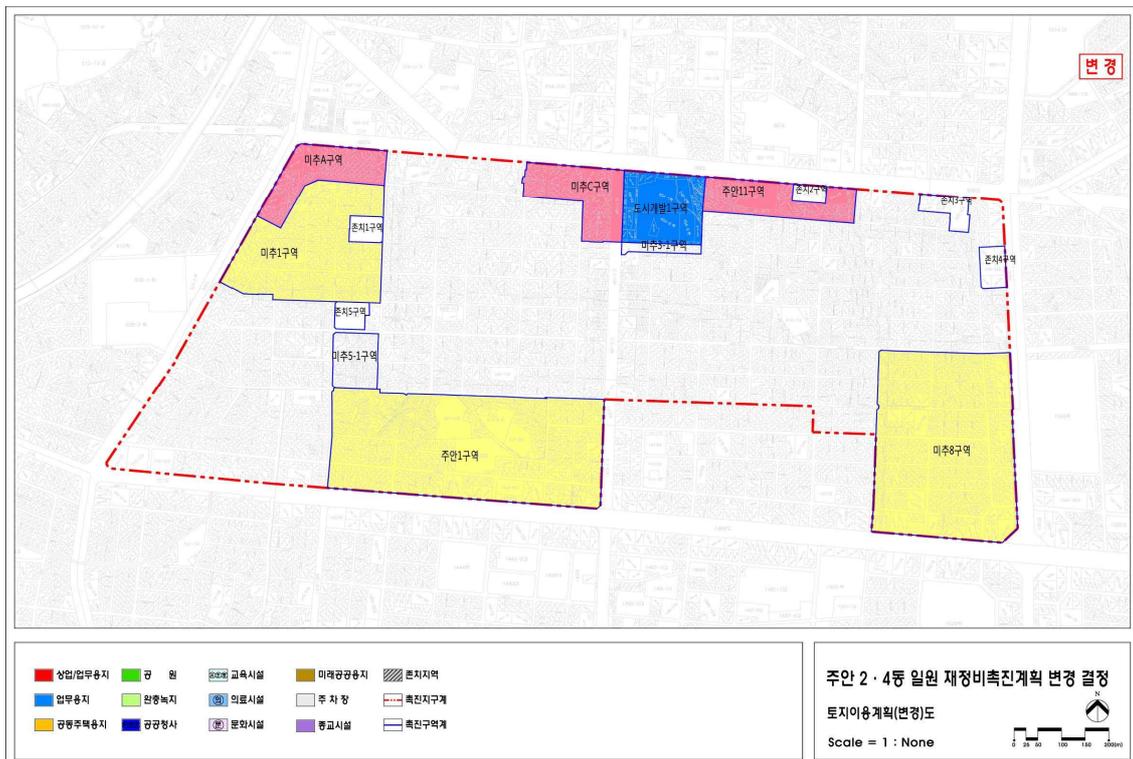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구역

1.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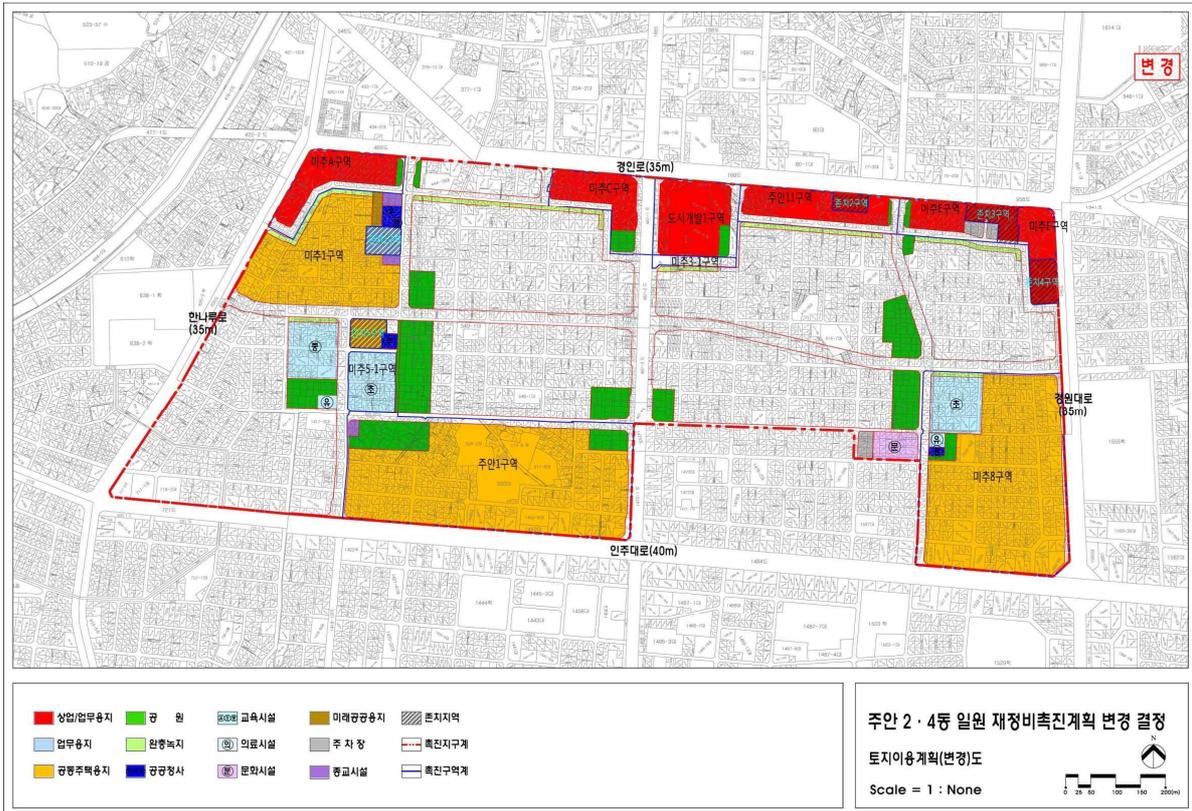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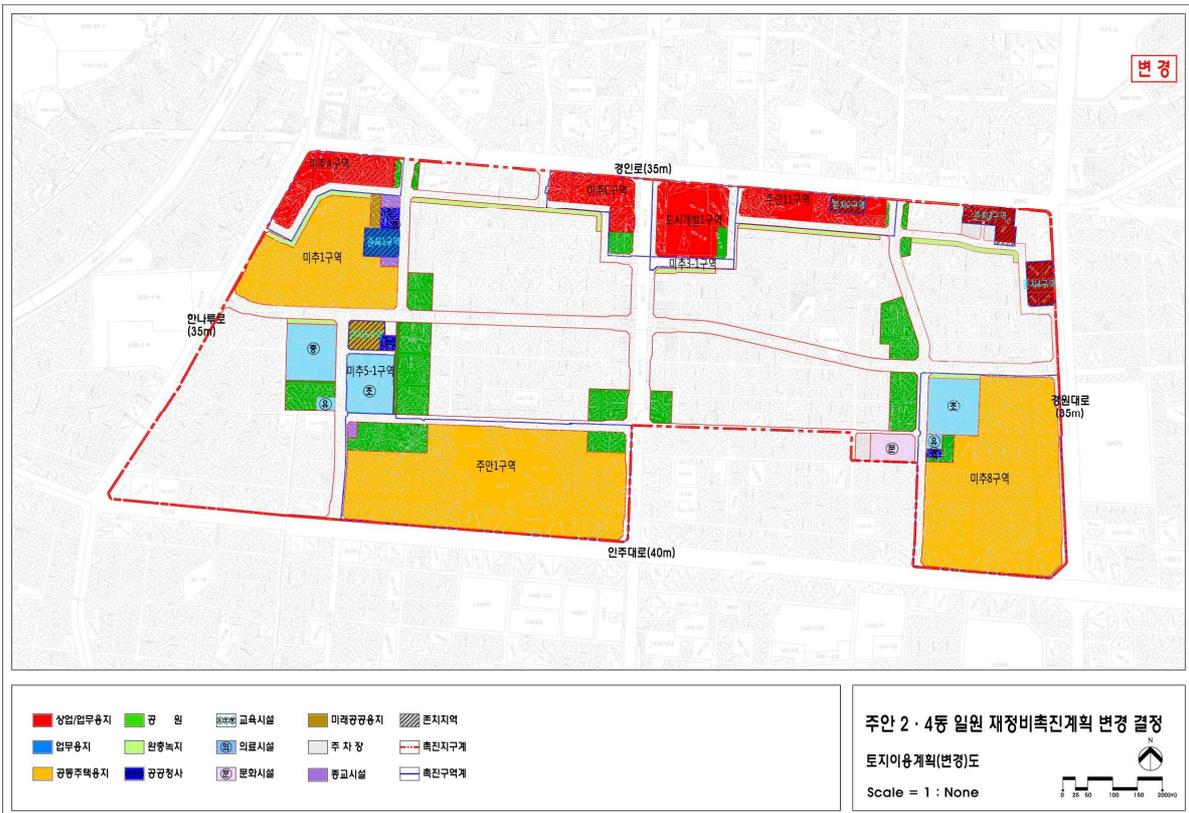


2. 토지이용계획(변경)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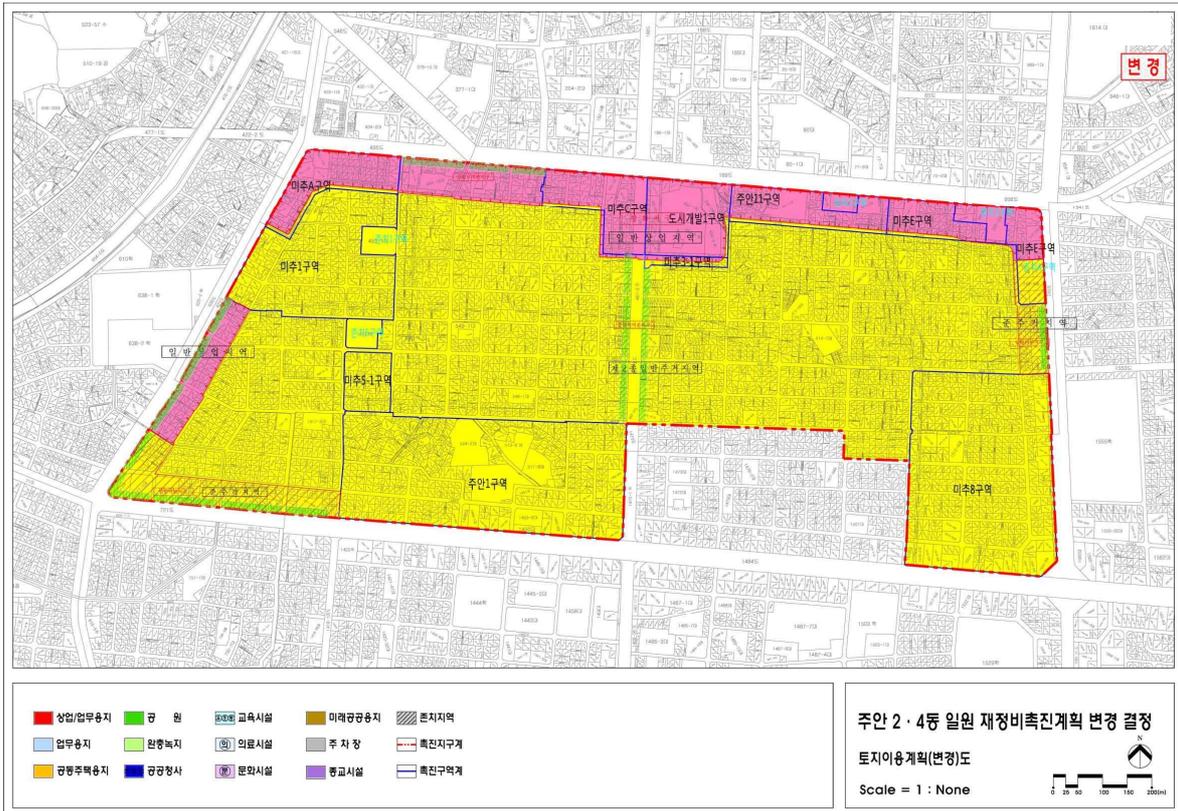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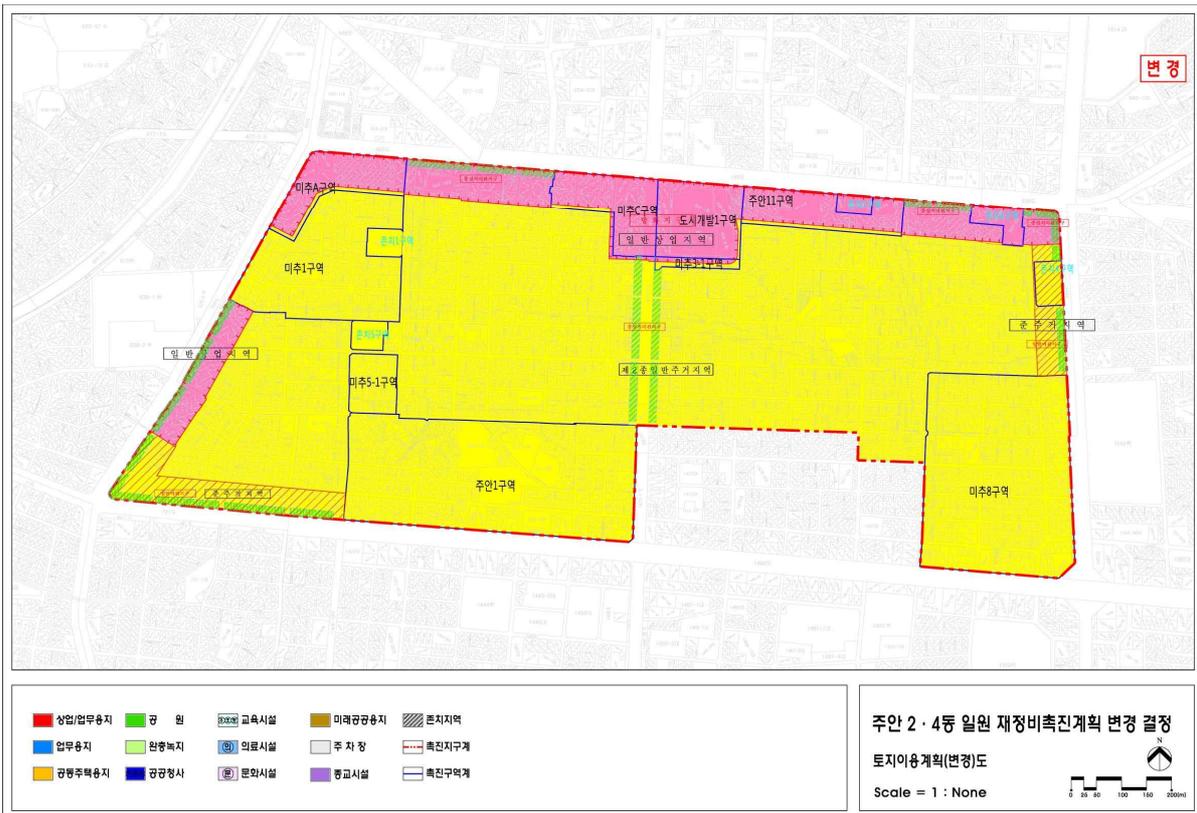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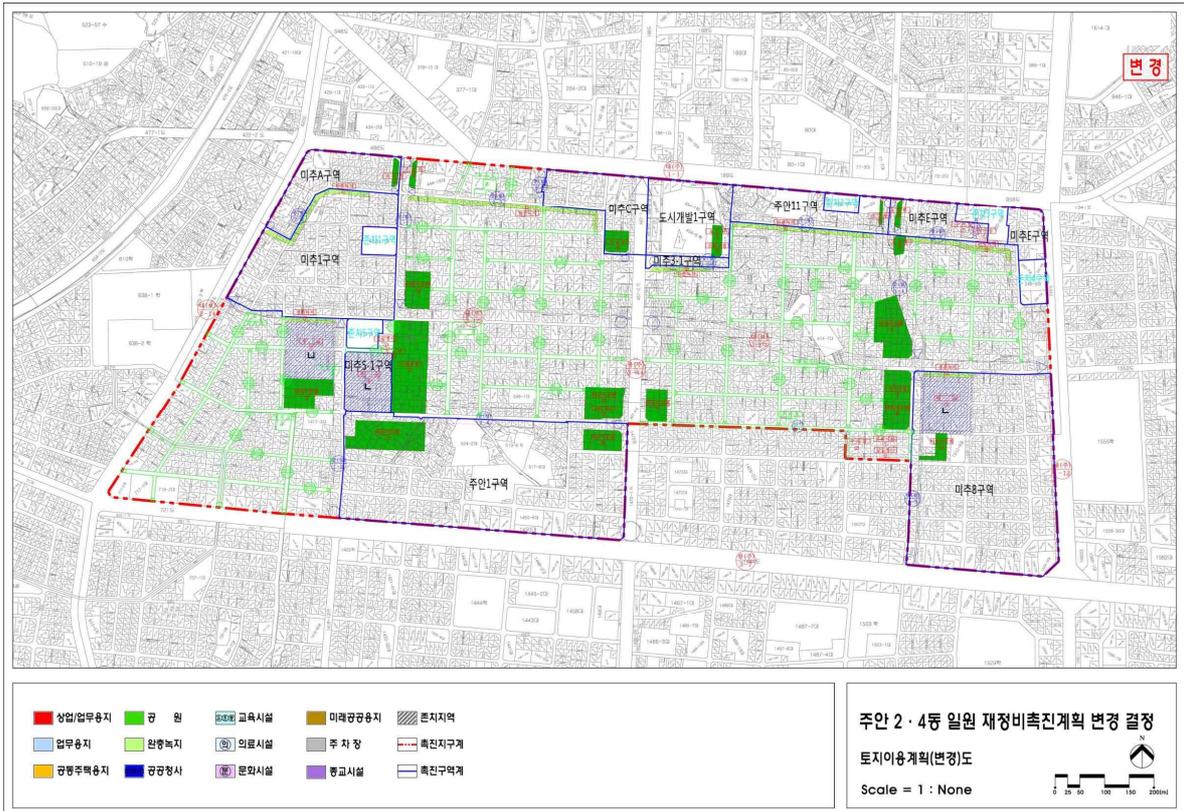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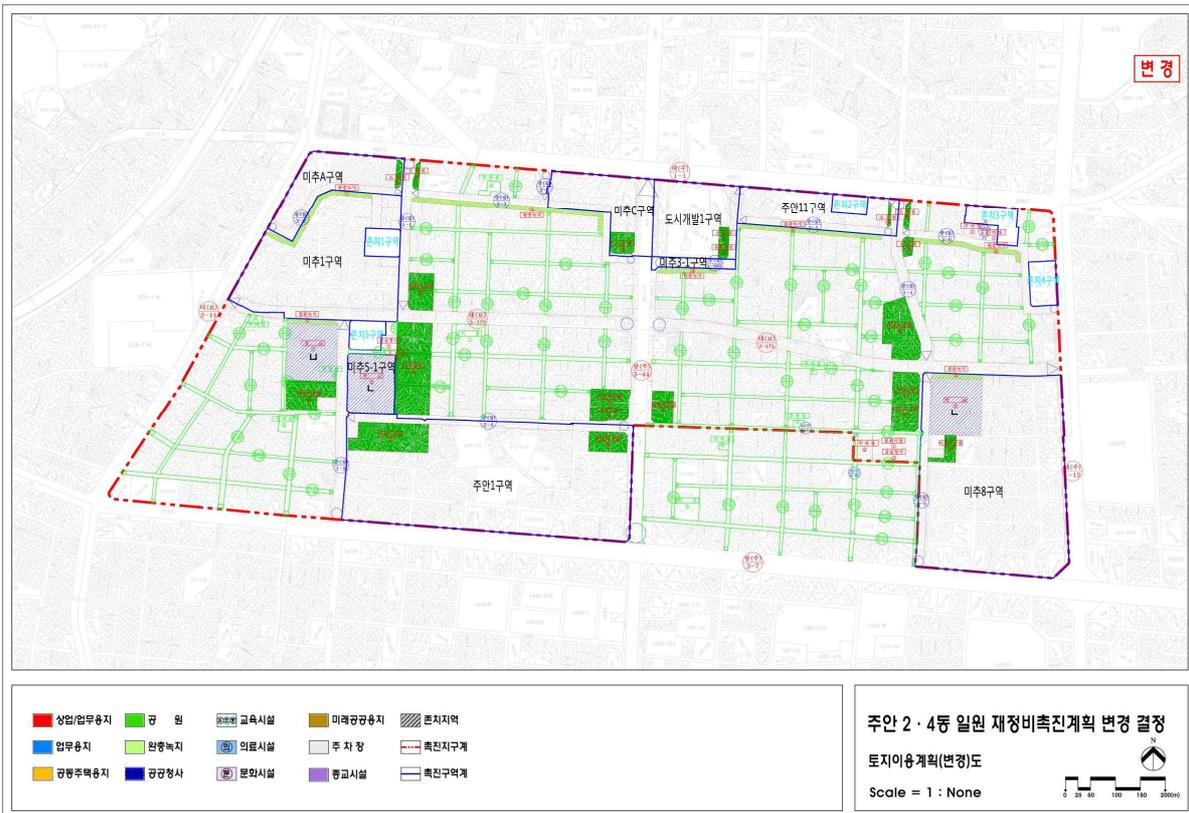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254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청천4지구, 북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명 :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지구 내역

사업시행자	사업지구의 명칭	사업지구의 위치	사업규모 (필지/면적)
부평구청장	청천4지구	인천 부평구 청천동 1번지 일원	133/228,669.4m ²
중구청장	북성1지구	인천 중구 북성동1가 1-3번지 일원	142/7,541.6m ²

3. 토지조서 및 지정도면

- 인천광역시청 및 해당 군·구청에 비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4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6호(2019.6.3.)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첨단산업클러스터(B) 지식기반산업용지 중 지식기반서비스(Ks7, Ks10)에 대하여 국내 우수기업 연구소 유치를 위한 건축물 허용용도, 획지계획 및 토지세부처분계획 변경
-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전문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Go1) 내 실버카페 추진을 위한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및 토지이동정리 완료에 따른 획지선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사업명: 첨단산업클러스터(B)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3,541,285.3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330,753.1	9.3
공 동 주 택	330,753.1	9.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6,240.1	0.7
상 업 시 설 용 지	105,558.6	2.9
주 상 복 합 용 지	97,558.6	2.7
지 식 기 반 산 업 지 원 용 지	8,000.0	0.2
산 업 시 설 용 지	1,234,689.7	34.9
지 식 기 반 제 조 용 지	911,908.1	25.8
지 식 기 반 서 비 스 용 지	217,785.7	6.1
지 식 기 반 R & D 용 지	104,995.9	3.0
연 구 시 설 용 지	183,057.3	5.2
교 육 연 구 용 지	183,057.3	5.2
공 공 기 반 시 설 용 지	1,660,986.5	47.0
도 로	863,950.8	24.4
도 로	862,450.0	24.3
보 행 자 전 용 도 로	1,500.8	0.1
공 원	569,027.5	16.1
육 지 부	569,027.5	16.1
공 공 녹 지	116,842.4	3.3
학 교	55,573.4	1.6
중 교 시 설	7,874.5	0.2
충 전 주 유 소	2,499.9	0.1
기 타 등 등	45,218.0	1.3
주 차 장	19,792.8	0.6
공 공 청 사	10,598.8	0.3
복 지 시 설	6,000.1	0.2
공 급 처 리 시 설	8,826.3	0.2

※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6호(2019.6.3.)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번지 일원

나. 면적: 3,541,285.3㎡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8년 ~ 2020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구분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0-2	대	25,575.1	25,575.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0-2	대	6,017.3	6,017.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0-5	대	9,633.4	9,633.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0-6	대	9,924.4	9,924.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3)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없음
-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 5) 지식기반산업용지(Ki, Ks, Kr):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위치	획지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면적(m ²)			
					기정	변경		
지식 기반 서비스	Ks1	Ks1	23,365.2	23,365.2		23,365.2	23,365.2	획지분할가능
	Ks2	Ks2	29,798.2	29,798.2	Ks2	29,798.2	29,798.2	
	Ks5	Ks5	22,693.3	22,693.3	Ks5	22,693.3	22,693.3	
	Ks6	Ks6	24,434.4	24,434.4	Ks6	24,434.4	24,434.4	
	Ks7	Ks7	28,722.4	28,722.4	Ks7	28,722.4	28,722.4	
	Ks8	Ks8	37,052.9	37,052.9	-1	4,818.3	4,818.3	획지분할불허
					-2	10,955.2	10,955.2	
					-3	4,854.8	4,854.8	
					-4	4,081.9	4,081.9	
					-5	3,304.9	3,304.9	
					-6	3,158.9	3,158.9	
					-7	3,025.6	3,025.6	
					-8	2,853.3	2,853.3	
	Ks10	Ks10	25,575.1	25,575.1	Ks10	25,575.1	-	획지분할가능
					-1	-	6,017.3	획지분할불허
-2					-	9,633.4	"	
-3					-	9,924.4	획지분할가능	
Ks11	Ks11	26,144.2	26,144.2	Ks11	26,144.2	26,144.2	획지분할가능	
소계	-	217,785.7	217,785.7	-	217,785.7	217,785.7	-	

■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변경	Ks7	Ks7	28,722.4	Ks7	28,722.4	○국내 우수기업 연구소 유치 내용을 반영하여 획지분할불허 반영
변경	Ks10	Ks10	25,575.1	-1	6,017.3	○국내 우수기업 연구소 유치 내용을 반영하여 획지계획 변경
				-2	9,633.4	
				-3	9,924.4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없음
-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 5) 지식기반산업용지(Ki, Ks, Kr): **변경**

구분			계획내용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용도 지식 기반 제조업 (Ki)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95% 이상 - 공 장(Ki9·11·12·13) -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에 한하여 부용도의 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이하로 허용함 -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으로서 유치업종분류표에 의한 용도로 하되,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공장의 범위 이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불허 용도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Ki8: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악취방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정(시설)은 제외

구분		계획내용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지식 기반 서비스 (Ks) 용도	허용 용도	○ 주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7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부용도: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3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 Ks1, Ks2의 부용도의 비율은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40%이하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지식 기반 R&D (Kr)	허용 용도	○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90% 이상 -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연구소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공장(건축연면적의 40% 미만으로 함)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공장(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 공장), 도시형공장)에 한함 ○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1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함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분			계획내용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건폐율	기정	○ 40%이하	Ki8	-	-
			○ 50%이하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3,-4), Kr2, Kr4
		변경	○ 40%이하	Ki8	-	-
			○ 50%이하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3,-4), Kr2, Kr4
	용적률	기정	○ 200%이하	Ki9, Ki12, Ki13-2	-	-
			○ 250%이하	Ki11	-	-
			○ 300%이하	Ki8	-	Kr1(-2,-3,-4), Kr2, Kr4
			○ 350%이하	-	Ks7	-
			○ 400%이하	-	Ks1~Ks4	-
		변경	○ 200%이하	Ki9, Ki12, Ki13-2	-	-
			○ 250%이하	Ki11	-	-
			○ 300%이하	Ki8	-	Kr1(-2,-3,-4), Kr2, Kr4
			○ 350%이하	-	Ks7	-
			○ 400%이하	-	Ks1~Ks2	-
	높이	기정	○ 170m이하	-	Ks2	-
			○ 100m이하	-	Ks1, Ks3~Ks4	-
			○ 90m 이하	Ki8	-	-
			○ 80m 이하	-	Ks7	-
			○ 60m 이하	Ki9, Ki11, Ki12, Ki13-2	-	Kr1(-2,-3,-4), Kr2, Kr4
		변경	○ 170m이하	-	Ks2	-
○ 100m이하			-	Ks1	-	
○ 90m 이하			Ki8	-	-	
○ 80m 이하			-	Ks7	-	
○ 60m 이하			Ki9, Ki11, Ki12, Ki13-2	-	Kr1(-2,-3,-4), Kr2, Kr4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4 Ks7 Kr1-2 Kr1-3 Kr1-4 Kr2 Kr4 <변경> Ki8, Ki9, Ki11 ,Ki12 Ki13-2 Ks1~Ks2 Ks7 Kr1-2 Kr1-3 Kr1-4 Kr2 Kr4	형태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서터 :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토록함) ○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색채	Ki, Ks, Kr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 20m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Ks7	용도	지식 기반 서비스 업 (Ks)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3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80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Ks7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서터 :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토록함) ○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 20m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Ks10 Ks11 <변경> Ks10 Ks11	용도 지식기반서비스업(Ks)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80m 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확보	
	형태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도록함)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색채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건축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Ks10	용도	지식 기반 서비스업 (Ks)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의료시설(가목에 한하며, 정신병원·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나목, 마목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R&D 유치업종과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관련시설 - 공장(건축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제조업(Ki)에서 허용하는 BT, IT업종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부용도 :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에 한함) -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 노유자시설(나목 제외) -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80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벽면은 가로와 평행하도록 배치 ○공장은 주거지와 이격거리 200m 확보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Ks10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권장 함 ○ 주요가각부에 랜드마크의 위치가 지정된 경우에는 입면·높이·형태 등에서 주변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함(권장)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개별 설치 불허 ○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불허.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 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 토록함) ○ 굴뚝·환기설비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불허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9m 저층부벽면지정선 : 광로2-20, 광로2-11 및 광로3-37호선변 - 전면 저층부(기단부)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이상 5층이하 : 광로2-11, 광로2-20호선변, 3층이하 : 광로3-37호선변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 교육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Go1 Go3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및 업무시설 가목) ○ 노유자시설(건축연면적의 40%이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청사 Go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및 업무시설 가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Go1
		○ 350% 이하	Go3
	높이	○ 50m 이하	Go1
		○ 80m 이하	Go3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및 주차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Go1 Go3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옥상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 1층 바닥높이 : 도로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m 건축한계선 : 20m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교시설용지(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 전기공급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 하수도용지(변경 없음)
- 공동구용지(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63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

1. 도로의 종류 : 광역시도
2. 노 선 명 : 강화해안순환도로 64호선
3. 사용개시 구간 (L=5.49km)
 - 시 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880-4(도)
 - 종 점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586-2(도)
4. 주요 통과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5. 전용구간
 - 시 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880-4(도)
 - 종 점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586-2(도)
6. 사용 개시일 : 2019년 8월 19일 13: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9. 8. 19 ~ 9. 2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로과(440-3792), 종합건설본부 토목부(440-5349)
8. 비 고 : 도로개통 시 관계기관(교통, 시설물관리 등)과 협의 후 개통 추진

첨부서류 : 지형도(1/50,000) 1부.

지형도(S = 1 : 50,00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72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수정)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공고기간 : 2019. 8. 13.(화) ~ 2019. 8. 19.(월)

□ 공고내용

가.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규모	추정 감정가액	발주부서	선정수
1	「연희 근린공원 조성사업」보상	○위치:서구 연희동 산127-1번지 일원 ○감정평가대상:토지 139필지, 건물 10동, 영업권 등	765억원	공원녹지과	1개업자
2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협약보상	○위치:서구 연희동 621-4번지 일원 ○감정평가대상:토지 151필지	61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투원사업단	1개업자
3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협약보상	○위치:미추홀구 학익동 220번지 일원 ○감정평가대상:토지 159필지, 지장물 134건, 영업권 72건	491억원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1개업자
4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협약보상	○위치: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 ○감정평가대상:토지 79필지, 지장물 87등	241억원	부평구 도시개발과	2개업자
5	부평중앙지하도상가 상용료 산출	○위치:부평구 시장로 지하10 ○감정평가대상:부평중앙지하도상가	117억원	인천시설공단	1개업자

※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참여사업 규모에 대한 변경(취소 등 포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심사일 기준 토지소유자 등 추천에 따른 해당사업 참여 감정평가업자는 선정 시 제외

- 「연희 근린공원 조성사업」: 미래세한, 중앙

-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삼창, 제일, 대한
-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미래새한, 하나

나. 신청자격

-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②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주·분사무소 포함)
-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 공고일 현재 3인 이상(심사자포함 자격취득 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

다. 신청기간 : 2019. 8. 13. ~ 2019. 8. 19.(18:00)

라.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시청 내 IDC건물 1층)

마. 제출서류

- ① 감정평가 참여신청서(서식 1)
- ② 법인등기·인가증(공고일 기준 발급),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인가서
- ③ 업무제안서(서식 2)
- ④ 업무제안서의 수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의사항)**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계획 작성 시 해당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이름 포함)를 표시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글자, 기호, 표식,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기재 시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무실적)** 대상사업 1회 이상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행한 감정평가 업무실적 보고 확인서 제출(*목록은 별도 제출)
 -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기타 유의사항

-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심의 선정(발주부서 개별통지)

나. 책임 감정평가사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함.

다. 업무제안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사후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 준용
- 감정평가 수행계획서 및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계획은 구분하여 각 2매 이내 구체적 작성

라. 업무제안서 내용 및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순위 자가 선정업자로 결정

바. 참여 신청접수(우편물 접수포함)는 2019. 8. 19.(월) 18:00까지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함.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임.

아.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아래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희 근린공원 조성사업」 : 공원녹지과(☎440-3657)
-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협의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450-8453)
-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의보상 :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872-1984)
-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의보상 : 부평구 도시개발과(☎509-6904)
- 부평중앙지하도상가 사용료 산출 : 인천시설공단(☎570-7172)

자.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팀(☎440-45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감정평가업자 참여 신청서

 참여 사업 :

 감정평가업자 :

구 분	내 용	비 고
감정평가업자		
주 소		
대 표 자		
감정평가사 수		
전 화 / FAX		
설 립 일		
기 타	※ 해당사업 기 참여 등 제외 해당 내역 기재	

※ 상기 법인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감정평가법인(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업 무 제 안 서

□ 참여사업 :

감정평가업자		사무소 소재지	
감정평가사 수 (명)	개인		
	법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수행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협회: 법인소속확인서)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협회: 경력증명서) ○ 평가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및 증빙자료(작성 예시 참조) ※ 협회: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대체 가능 ○ 보험 등 가입여부(협회: 공제사업가입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등) ○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주의,경고 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여부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협회: 징계유무확인서 등) ○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등 : 별지 2장 이내로 구체적 작성 		
감정평가 수행계획	○ 참여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일정 등 : 별지 2장 이내 구체적 작성		
기타 의견	※ 해당사업 기 참여 등 제외 해당 내역 기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감정평가법인(인)

※ 본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평가실적 (최근 3년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연번	사업명	발주부서	감정평가서 제출일	감정평가금액	비고
총계					
1					
2					
3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평가실적 합계는 상단 총계란에 반드시 기재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감정평가 실무경력		비고
				근무기관	기간(년월)	
1					~ (년월)	소계 년월
					~ (년월)	
					~ (년월)	
2					~ (년월)	소계 년월
					~ (년월)	
					~ (년월)	
3					~ (년월)	소계 년월
					~ (년월)	
					~ (년월)	
계	평균 실무경력 : 년 월					

※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은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7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디에스 파트너스	정덕수	2019. 8. 13.	인천190011	300,000,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302호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75호

공시송달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13.

인천광역시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제2019-1434호)
2. 공고기간 : 2019년 8월 13일 ~ 2019년 8월 27일까지
3.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 032-440-844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1	조*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로1**번길 12 , 4동 *01호(오*동,**아아파트)	23마7693	수취인불명	
2	유*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로 58, 1**동 1*01호 (부*동, 푸*마을*신아파트)	인천73노3443	수취인불명	
3	홍*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로 11* (면*동)	경기71구1675	주소불명	
4	(주)신**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7길 19, 10*호 (고척동, *아트빌)	97구9225	수취인불명	
5	바**역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로 9*-2* (가*동, 엠*크 수출단지)	64저3332	폐문부재	
6	주식회사 디*스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탁*로 89, 20*호 (심곡동, 삼*타워)	64소2411	수취인불명	
7	정*용	인천광역시 서구 *달로149번길 6-9, 2동 1**호 (석*동, 드*빌라)	58두0232	폐문부재	
8	최*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로 878, 1*2동 2*5호(병*동,*마을서*.*남아파트)	54오1702	수취인불명	
9	(주)씨**커뮤 니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털로**길 30, **롱디지***빌라트 71*호(구*동)	30소7911	수취인불명	
10	(주)오*환경	인천광역시 동구 방*로9번길*7 (송*동)	28도2135	수취인불명	
11	(주)칼*빈	인천광역시 중구 축*대로8*번길 8 (항*7가)	27조5625	수취인불명	
12	박*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로 71-*,6동 **2호 (청*동)	16버8219	폐문부재	
13	곽*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 52 , 5**동 10*호(작전동,**리마을**아파트)	16마2583	수취인불명	
14	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로13번길 *5, 5층 **1-2*호 (구*동,*인프라자)	11보3009	수취인불명	
15	김*수	경기도 양평군 용*로 1**-1 (청*면)	07다7090	폐문부재	
16	(주) 오**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로 1*, 동신빌딩 5층 (**동)	02무6349	폐문부재	
17	(주)두*요업	인천광역시서구**로12*번길 4*(석*동)	01서8459	수취인불명	
18	이*협	경기도 양주시 광*로2*7번길 1*3 (광*면)	45도7066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84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 對 일본 직접교역에 대한 피해기업 또는 간접 피해기업 **[별첨3] 참조**

직접교역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본과 수출입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② 일본과의 수출입 실적은 없지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간접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④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은 없지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지원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 한도산정 : 매출액의 1/3 및 직전 1년간 거래실적의 1/2 중 작은 금액적용
※ 계약은 수령 예정금액의 90% 적용

- 지원기간 : 1년,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4. 기타조건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출입은행

5.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8. 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1층, ITP 성장지원센터)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032)260-0621~4

8. 신청 구비서류

NO.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2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3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등
4	국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5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6	신 청 서	소정양식-별첨1
7	사용계획서	소정양식-별첨2
8	확인서	확인서(소정양식-별첨3) 및 증빙서류
9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별첨4

2.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중인 기업으로,
- 對 일본 직접교역에 대한 피해기업 또는 간접 피해기업 [별첨3] 참조

2. 지원내용 : 상환중인 원금 또는 상환예정 원금에 대한 상환유예

-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 시 분할상환 4회차분까지 유예 신청 가능)
-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대출금 만기일 범위이내, 만기연장 없음)
- 지원절차 : 유예검토요청(업체→ITP) ⇒ 사유검토 내부결재(ITP) ⇒ 상환유예 신청서 제출 (업체→ITP, 해당은행 확인도장 날인) ⇒ 승인공문 발송(ITP→업체은행)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상환일 1개월 전
-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1층, ITP 성장지원센터)
- 신청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032)260-0621~4

4. 신청 구비서류

NO.	서 류	비 고
1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소정양식-별첨5
2	대출원장 조회표 및 상환스케줄표	은행발급 서류
3	상환유예 신청관련 증빙서류	확인서(소정양식-별첨3) 및 증빙서류

3. 기타사항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별첨 2] 사용계획서 양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자금 사용계획서

1.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받은 실적

(단위:백만원)

지원기관	지원 년도	대출액	대출일자	신청일 현재 대출 잔액	상환만료 기한	자금용도

주1) 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 중앙부처 등 정책자금을 모두 기재 (인천시자금 제외)

2.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금액 합계는 신청 금액과 동일)

지출항목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비고
ex) 인건비			
ex) 판매관리비			
합계			

3. 경영현황

ex) 당사는 일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A사로 부터 관련부품을 납품받아 공작용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로, 일본 수출규제이후 A사의 생산량 감소로 관련부품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체 거래처 발굴 및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음

향후,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샘플생산 이후 본격적 거래로 생산자재를 조달할 계획임

새로운 거래처와의 거래를 위해서는 운전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금융비용도 크게 부담되는 상황임

주1) 전반적인 현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피해업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서 및 증빙서류로 별도증빙함

※ 피해기업 판단기준 : 업체작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확인

직접 교역 피해	[1] 일본과 수출입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p>①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일본과의 수출입 거래실적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 확인내용 : 국가, 금액(신고금액) 등으로 對 일본 수출입 여부 확인 <p>②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 취소통보 문서, 이메일, Claim 문서, 거래감소 입증서류(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등) 등 <li style="color: red;">※ 2019. 7. 4 이후 통보된 문서 <li style="color: red;">※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본 추가제출 - 확인내용 : 거래 지연 및 취소 등의 피해사실 여부 확인
	[2] 일본과의 수출입 실적은 없지만 수출입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p>① 향후 수출입 거래예정이었음을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 수출입 계약서, 신용장, 협약서 등 - 확인내용 : 국가, 수출입자 상호 등으로 對 일본 거래여부 확인 <p>② 거래 지연·중단·취소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 취소통보 문서, 이메일, Claim 문서 등 <li style="color: red;">※ 2019. 7. 4 이후 통보된 문서 <li style="color: red;">※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본 추가제출 - 확인내용 : 계약 지연 및 파기 등의 피해사실 여부 확인
간접 피해	[3]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p>①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일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의 거래 실적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간접수출) - 확인내용 : 금액 등 거래실적 확인 <p>② 실적증빙 거래업체가 일본과의 무역기업임을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 실적증빙 거래업체 보유서류(수출입신고필증 샘플서류 등),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 확인내용 : 거래업체의 對 일본 무역여부 확인 <li style="color: red;">※ 거래업체가 1, 2차 벤더일 경우 거래업체와 일본 무역 기업간의 실적확인 샘플서류 추가징구 <p>③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 취소통보 문서, 이메일, 거래감소 입증서류(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등) 등 <li style="color: red;">※ 2019. 7. 4 이후 통보된 문서 - 확인내용 : 거래 지연 및 취소 등의 피해사실 여부 확인

[4]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은 없지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간접
피해**

① 향후 거래예정이었음을 증빙

- 증빙서류 : 계약서, 협약서 등
- 확인내용 : 거래 예정여부, 계약금액 등 확인

② 계약증빙 거래업체가 일본과의 무역기업임을 증빙

- 증빙서류 : 계약증빙 거래업체 보유서류(수출입신고필증 샘플서류 등),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 확인내용 : 계약업체의 對 일본 무역여부 확인
※ 계약업체가 1, 2차 벤더일 경우 계약업체와 일본 무역 기업간의 실적확인 샘플서류 추가징구

③ 거래 지연·중단·취소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증빙

- 증빙서류 : 취소통보 문서, 이메일, Claim 문서 등
※ 2019. 7. 4 이후 통보된 문서
- 확인내용 : 계약 지연 및 파기 등의 피해사실 여부 확인

※ 실적 및 계약, 모두 증빙 가능한 기업은 선택 가능함

[별첨 4]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양식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업체명				
우편번호	-	주소		
담당자		전화	팩스	

문서번호 :	선결			지시	
시행일자 :	접수	일자 시간 번호		결재	
경유 :				· 공 람	
수신 :		처리과			
참조 :		담당자			

제 목 : 인천광역시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상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유 :
- 세부내용

관리번호		용자은행		용자일자	
				만기일자	
최초분할원금 상환일	년	월	일	최종상환기일	년 월 일
유예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예방법	분할상환 ()회차분 유예,		회차별 ()개월 유예		
유예신청 할부기일	①	년	월 일	②	년 월 일
	(할부원금 : 원)		(할부원금 : 원)		
유예이후 상환기일	③	년	월 일	④	년 월 일
	(할부원금 : 원)		(할부원금 : 원)		
유예이후 상환기일	①	년	월 일	②	년 월 일
	(상환금 총액 : 원)		(상환금 총액 : 원)		
유예이후 상환기일	③	년	월 일	④	년 월 일
	(상환금 총액 : 원)		(상환금 총액 : 원)		
은행상담 상담도장 없을시 유예조치 불가	은행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인)

1. 대출은행의 대출원장조회표 및 상환스케줄표 각 1부
2. 상환유예 신청사유 증빙서류 1부. 끝.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첨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이용 목적	인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인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기간	5년	보유이용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	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인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3자 (제공 기관)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신성장산업과 등), 관내 군·구, 시의회, 중앙정부 등	
	지원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 현재 14개 협약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K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K국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 향후 인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협약하는 은행	
기타사항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	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접수연도 : 2019년

회사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업체 확인사항

중소기업이 맞습니까?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 제외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까? ※ 상장업체 지원대상 제외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서약서

<지원중단 및 이차보전금 회수>

1. 지원중단 및 이차보전금 회수 대상

- 가. 휴폐업 기업
- 나. 관외로 이전한 기업
- 다. 전업률(손익계산서의 제품매출 비율) 30% 미충족 기업
 - 자금지원을 받은 다음연도에 지원연도의 전업률을 확인하며, 미충족 기업은 지원일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이 전액 회수됨
- 라. 부도 등 영업을 중단한 기업
- 마.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
-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동일한 대출건에 대하여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사후확인 시 이중으로 지원된 건은 전액 회수됨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 이내에서 다른 대출건으로 추가지원은 가능함)
- 사. 기타 지원요건 미충족 등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중단·회수시기 및 방법

- 가. 휴폐업 일자, 관외이전 일자 등 중단사유 발생일자부터 소급하여 중단 및 회수
- 나. 중단일자부터 정산한 회수금액은 기업에서 대출은행과 정산함

<사후관리>

1. 전업률 조사

- 자금지원을 받은 후 다음연도 4월에서 7월까지(법인: 4월~5월, 개인: 6~7월)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1개월분)를 접수사이트(비즈오케이)를 통해 제출한다.
 - ※ 경로: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go.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2. 설문 조사

-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회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 기한내 설문지를 제출한다.

3. 업체정보 변경보고

-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과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인천테크노파크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 '업체정보 변경신청서'는 기관홈페이지(www.itp.or.kr)의 [지원사업소개] - [기업지원사업]-[성장지원센터]-[해당사업]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4. 기타 사후관리 협조

- 기타 지원결정통보서의 사후관리 내용을 숙지한 후 이에 협조한다.

접수연도 : 2019년

회사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융자금 지원과 관련한 관리 및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협조에 불성실시 불이익 처분이 따를수 있음에 동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85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 과태료 납부고지 대상자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1	37누7888	남*숙	2019-05-15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로*번길 ***(남북동)
2	인천30바8 226	최*길	2019-05-16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금송로 ** (송림동)
3	52저1134	최*진	2019-05-20	50000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번길 **, ***호(교동)
4	56로0934	김*건	2019-05-31	5000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_** 가동 ***호 (대풍빌라)
5	21호6537	(주*****	2019-06-04	5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번길 *** (고색동)
6	06우8031	박*철	2019-05-29	50000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청신로 **
7	09소7056	정*미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 ***동 ****호(송의동, 한아름아파트)
8	67수9352	정*진	2019-06-0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 ***호(경서동, 사랑채)
9	83거3552	(주*****	2019-06-0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산곡동)
10	61누3000	한*원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동 ***호(연수동, 승기마을아파트)

11	41누7956	이*훈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12	76녀5154	박*재	2019-06-05	6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 ***호(청학동, 유경주택)
13	26버2492	임*숙	2019-05-15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번지
14	50부0506	(주***** *)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번길 **, * *층(남촌동, 남동공단 **블록 **롯데)
15	77가4487	김*화	2019-06-12	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호 (주안동, 앙상블)
16	67호8579	뉴스**** ***	2019-05-09	5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 (세류동,성림빌딩 *층)
17	67누8070	정*하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비룡길**번길 **-**(용현동)
18	64루3478	유한**** ****	2019-06-11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 *** *호(합정동, 신우빌딩)
19	06오1943	최*민	2019-05-20	50000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번길 ** ***호 (상동, 대동프라자)
20	23어4196	나*****	2019-05-22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길 *-*, *** *호(사동)
21	03주2524	김*호	2019-06-10	5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번길 **-* *층호(호계동)
22	인천30바9 401	조*식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 ***호(계산동, 대양나이스빌*차)
23	25라0766	양*우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번길 *, *동 ***호(계산동, 극동아파트)
24	25모1115	한*	2019-06-03	50000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
25	41구1739	김*웅	2019-06-06	5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 ***호(잠실동)
26	39무4968	유*호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 ***동 ****호(운남동, 영종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
27	89조6779	박*만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 *층(주안동)
28	04노8200	김*정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번길 **, *동 ***호(만수동, 삼성탑스빌)
29	04노8200	김*정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번길 **, *동 ***호(만수동, 삼성탑스빌)
30	23두9211	정*순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31	49누0681	이*권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번길 ***(장수동)
32	59로0841	김*순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지층동 (만수동)
33	24호2723	김*우	2019-06-12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번길 **-* ***호 (토당동,세진빌라)
34	인천30바7 144	김*균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35	03너0826	박*주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호(주안동)
36	18러2648	김*일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동 ****호 (주안동, 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
37	30보6994	허*혁	2019-05-24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 ***호(토당동, 그린빌)
38	93소2173	이*만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호 (송의동, 월드리드빌)
39	91주7927	권*미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구월동, 롯데캐슬골드)
40	11부1502	박*빈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 ***동 ***호 (서창동, 임광그대가아파트)
41	42버1686	박*순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 *동 ***호 (만수동, 거명하이츠)
42	39수8356	황*영	2019-05-1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번길 * , *동 ***호(신현동, 대신빌리지)
43	11거8355	유*숙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 (도화동, 해피타운)
44	85도8807	윤*필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번길 **, ***동 ***호(산곡동, 우성아파트)
45	82너4445	주식**** *	2019-05-29	5000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번길 **
46	31노8900	신*구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도화동)
47	33호2794	심*준	2019-05-14	50000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로 **-* (은행동,동경*차) 나동 ***호
48	14주4956	김*모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 ***호(주안동, 스페이스이모션)
49	77너4461	김*철	2019-05-30	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 ***호(송의동, 더젠시티 *차)

50	63모1302	HU***** *****	2019-06-04	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길 **, (시흥동)
51	인천30바9 486	채*태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 ***,동 ****호(연수동, 풍림아파트)
52	인천32바1 528	박*식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번길 ***_*(도화동)
53	03부8028	성*용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호(구월동, 윤송리치빌)
54	31보5984	이*철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 ***,동 ***호(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단지)
55	84저3974	최*란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동 ***호(구월동, 롯데환타빌)
56	59오5919	김*희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동 ***호 (주안동, 신비마을아파트)
57	62나6030	강*범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 *동 ***호 (삼산동, 부영아파트)
58	06소5555	차*운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번길 **, ****호(석남동, 보광오피스텔)
59	24어0481	박*수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 ***,호 (연수동)
60	01머3132	김*련	2019-05-30	5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길 ** (선부동)
61	38두0566	권*흥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_* ***호 (구월동, 현대빌라)
62	58누6753	임*철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 ***,동 ***호(병방동, 학마을한진아파트)
63	42주4667	김*화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 *동 ***호(가좌동, 청솔빌라)
64	86도4411	최*용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 ****호 (주안동, 한덕주상복합아파트)
65	47마8116	황*현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주안동)
66	80우4530	최*만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구월동)
67	40구6791	신*환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도화동, 올레오)
68	인천32고5 334	황*근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호(주안동, 인하오피스텔)

69	인천30바8 067	원*연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 ***동 ***호(용현동, 엘에이치미추홀퍼스트)
70	53노0935	김*용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도화동, 해피타운)
71	45다8901	이*미	2019-06-12	50000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 ****동 ***호(상동, 진달래마을)
72	27수0531	주*	2019-06-11	50000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길 **-* , ***호(정왕동)
73	04마7355	이*현	2019-06-13	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길 *-** , 지층 *호(시흥동)
74	11거8355	유*숙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 (도화동, 해피타운)
75	38구4410	김*연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 *동 ***호(구월동, 정남빌라)
76	01하5748	정*영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재길 ** ***호 (굴현동, 중앙*-클래스**차)
77	62무4808	이*지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호 (구월동, ***오피스텔)
78	42마3897	박*구	2019-05-21	50000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송암로**번길 **-**
79	04루7167	김*수	2019-05-29	5000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번길 **(의정부동)
80	18라4252	PH***** *****	2019-05-23	5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 **-* , *층(대성동)
81	64저6190	구*영	2019-05-23	50000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번길 ** ***호 (덕천동, 신우베스트빌)
82	28다0722	백*광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 , ****호(부평동, 지예타워)
83	12버3518	박*환	2019-05-15	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 *동 ***호(자양동, 이튼타워리버*차)
84	26수4083	최*호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로 ** (화수동)
85	26수4083	최*호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로 ** (화수동)
86	13머1073	김*선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 *, *동 ***호(구월동, 미래아트빌)
87	51서4467	김*환	2019-05-20	5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길 **-*(고잔동)

88	87고9807	유*환	2019-06-05	5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길 ***(초지동)
89	18노1199	CU***** ***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번길 **(부평동)
90	서울89자2 342	서*태	2019-05-24	5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향교로 **-* 가동 ***호(양지빌리지)
91	32어2558	백*정	2019-05-17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길 ** (이동)
92	36무9730	김*곤	2019-05-16	500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번길 **-*
93	06루0299	이*식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인증로***번길 ** (송림동)
94	89다9278	예준**** ***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산곡동)
95	10보4773	주식**** ***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 (왕길동)
96	66서7271	윤*주	2019-05-30	50000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 ***동 ****호(낙양동, 호반베르디움*차)
97	03저7560	최*승	2019-06-12	50000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 ***호 (철산동, 청우하이츠빌)
98	15모1253	염*섭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 ***동 ***호(연수동, 연수주공*차아파트)
99	89도7740	주식**** ***	2019-06-14	50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
100	40하7240	(주***** ***	2019-05-23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 파라다이스빌딩 ***, ***호
101	인천32바1 715	장*수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번지
102	09머5633	김*배	2019-06-14	50000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번길 **, ***동 ***호(여월동, 여월휴먼시아)
103	25버5721	현*숙	2019-05-15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 *층(울목동)
104	서울32사5 983	김*호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로*번길 *(전동)
105	24수6022	허*	2019-05-15	50000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 ***동 ***호(비전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106	32구4722	임*훈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동 ***호(효성동, 한솔리치빌)
107	서울37너1 761	손*환	2019-05-17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흥릉로**길 **, ***동 ***호(청량리동, 흥릉동부아파트)

108	86버8786	이*용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서해대로 ***-* (송림동)
109	74루1233	곽*기	2019-06-12	60000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내신동*길 **-**
110	49가7359	구*숙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 ***동 ***호(박촌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11	04호8885	해넷**** *****	2019-06-13	50000	경기도 시흥시 공단*대로 **, **동 ***호(정왕동,공구상가)
112	34오8813	박*순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번길 * ***호 (심곡동, 세동주택)
113	66오8989	김*화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동 ***호(작전동, 현대아파트)
114	인천30바3 921	곽*복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동 ***호(가좌동, 진주아파트)
115	06조5763	비앤**** ****	2019-06-11	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 *층 *호(전농동, 조이전농프라자)
116	04오9457	박*훈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 ***호(작전동)
117	51너2839	이*호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번길 **, ***동 ***호(계산동, 인정프린스아파트)
118	57보3603	이*훈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번길 **(산곡동)
119	21로4925	권*우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동 ***호(산곡동, 뉴서울아파트)
120	인천30바7 115	김*국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번길 **-(운남동)
121	15두8011	김*인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 ***동 ***호(청라동, 청라린스트라우스)
122	49가7976	김*남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주안동)
123	04나3767	김*철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안길**번길 **, *층 ***호(용현동)
124	47머7163	소*화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 **-*, ***호(주안동, 삼흥그린빌)
125	69오0467	박*민	2019-05-21	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 ***동 ***호(송천동*가, 에코시티더샵*차)
126	인천30바9 989	오*석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번길 **, ***동 ***호(가좌동, 진주아파트)
127	33러3952	안*중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번길 **-*, ***호(만수동, 흥성다세대주택)
128	57서0293	김*진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호(간석동, 노블하우스)

129	67무7102	김*엽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호(주안동, 칼로스빌)
130	09오9366	조*연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번길 * , *동 ****호(삼산동, 삼보아파트)
131	31무0768	김*남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132	42라8725	고*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남로**번길 **-* *동 ***호(부평동, 유일빌라)
133	49무1789	유*걸	2019-05-22	5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번길 ** ***호(화서동, 건우빌라)
134	39소5711	이*심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호(간석동, 정우팰리스)
135	11허8539	방*찬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라동 ***호(만수동, 아주아파트)
136	57노2145	김*경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동 ***호(주안동, 로얄아파트)
137	인천30바9 440	권*영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번길 **, ***동 ****호(간석동, 한신더휴아파트)
138	38가2664	이*구	2019-05-22	50000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번길 **-* **동 ***호(원종동, 진주빌라)
139	43구8018	한*오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_**, *층동(만수동)
140	01너2731	한*례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141	19보4369	서*욱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번길 **, ***호(만수동, 일신다세대주택)
142	48서2522	이*숙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 ***동 ****호(구월동, 대우재엘에이치)
143	인천30바8 057	박*성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번길 **, ***호(만수동)
144	08수3419	김*현	2019-06-04	5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번길 **-* (지동)
145	23무7017	남*섭	2019-06-04	5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 ***호(연무동, 익주아파트)
146	72더8605	김*영	2019-06-04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호(구월동, 부광빌라)
147	15저9927	성*제	2019-06-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 ***호(주안동, 월드리버빌)
148	10보7270	김*열	2018-06-27	50000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번지 **호 **/*

149	14라6743	권*우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나루로 ***-**, ***호(주안동, 정은사이버빌)
150	33주9738	심*현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번길 **, ***호(간석동, 효성하이빌)
151	58모6984	이*현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 ***호 (송의동, 탑클래시아)
152	58모6984	이*현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 ***호 (송의동, 탑클래시아)
153	65서0328	차*철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호(주안동, 희망그린빌라)
154	82어6589	주*태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동 ****호 (용현동, 엘에이치미추홀퍼스트)
155	87보7339	윤*현	2019-06-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 ***호 (관교동)
156	93저1047	전*국	2019-06-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동 ***호(만수동, 경인맨션)
157	02로5541	홍*석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호(주안동)
158	67저0954	우*복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번길 **, 가동 ***호(옥련동, 송학동지아파트)
159	03마8184	이*기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 ***호 (구월동, 파티마오피스텔)
160	04너6801	이*훈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효성상아맨션)
161	07고4108	김*규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효성상아맨션)
162	86수7177	조*희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호(주안동, 스위트리아 아파트)
163	26조3714	김*산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 나동 ***호(갈산동, 백조아파트)
164	26더1884	장*재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번길 **, ***호(문학동, 미리내주택)
165	54오1273	김*임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간석동, 아트빌라)
166	55서7352	이*상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 ***동 ****호 (중산동, 하늘도시 우미린*단지)
167	86너8624	고*진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동 ****호(주안동,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168	96노9286	홍*표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 *동 ***호(간석동, 뉴파크빌리지)
169	인천32바2 407	조*기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층 ***호(간석동)
170	05너7013	한*단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염전로 ** , ***동 ***호(간석동, 간석 신동아파밀리에 명품아파트)
171	15버0911	우*선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 **동 ***호(주안동, 남광로알아파트)
172	27오5150	김*식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번길 **-* , ***호(연수동)
173	57서4943	이*민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 ***호(논현동)
174	87부6107	엄*무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 , ***동 ***호(송도동, 롯데캐슬)
175	인천85아1 070	신*수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 *동 ***호(간석동, 극동아파트)
176	16모4948	이*순	2019-05-1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 ***동 ***호(간석동, 다정한마을서해아파트)
177	85고7944	박*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 지하층 ***호(남촌동, 정산빌라)
178	인천30바5 229	김*구	2019-06-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번길 ** , ***동 ****호(만수동, 대동아파트)
179	10수4854	류*현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번길 **-* , ***동 ***호(부평동, 성지위너스타운)
180	17버1411	김*인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번길 ** , ***호(송의동, 더젠시티)
181	45무6919	고*설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번길 *(간석동)
182	86나7339	양*선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 ***동 ****호(주안동, 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
183	18무5025	이*성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 ***호(만수동, 삼성베라체)
184	27머4645	이*희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 *동 ***호(만수동, 대동아파트)
185	36부1301	안*진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 *동 ***호(간석동, 새빛하이츠빌라)
186	43다9562	오*만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북로**번길 **-* , ***호(장수동, 중앙힐타운)

187	46고6854	이*희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번길 **, **동 ***호(만수동, 삼미다세대주택)
188	76두8839	이*자	2019-05-23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 ***호(만수동, 정은아파트)
189	14우0891	박*미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인증로 *** **호 (송현동, 누리아파트)
190	04러5696	오*학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다동 ***호(간석동, 삼도빌라)
191	09호6955	권*혜	2019-05-15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 **호 (부평동, **아파트)
192	49조3983	서*순	2019-05-1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호 (송의동, 대광주택)
193	13루4585	전*배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동 ***호(주안동, 태화아파트)
194	36보5807	최*실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길 *, ***동 ***호(왕길동, 마전주공아파트)
195	43로7072	김*정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동 ****호(용현동, 금호타운)
196	52조2816	정*숙	2019-05-1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동 ***호(주안동,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197	56조9041	김*수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간석동)
198	52무2961	최*수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 (간석동, 럭키하우스)
199	63소6658	이*숙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동 ****호(학익동, 엑슬루타워)
200	16오7741	정*일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호 (간석동, 갤럭시타운)
201	28저3544	신*호	2019-06-12	50000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 ***동 ***호(웅천동, 웅천지웰아파트)
202	34다4674	김*연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대로 ** ****호 (중산동)
203	54보5407	이*호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번길 * ***호 (송림동, 성현아트빌)
204	81오0586	김*용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 (송의동, 퍼스트아파트)
205	15모4544	김*래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 **동 ***호 (옥련동, 쌍용아파트)

206	69버7744	김*숙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호(주안동, 대성빌리뷰)
207	91나3981	김*규	2017-08-3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 ***동 ***호(도화동, 신동아파밀리에)
208	인천30바2 521	조*학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 *동 ****호(간석동, 우성아파트)
209	30머7262	장*권	2019-06-07	50000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 *동 ***호(정왕동, 메가폴리스)
210	36머3699	김*문	2019-06-07	500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번길 ** (원미동)
211	48너9440	이*엽	2019-06-07	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길 **, *동 ***호(구산동, 동익파크***)
212	80라9192	백*숙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번길 **-, *층(만수동)
213	81가9231	김*민	2019-06-07	5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번길 **-(원미동)
214	17마7888	주*용	2019-05-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번길 ** ***동 ***호 (주안동, 파랑새아이빌)
215	06허7024	이*희	2019-04-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산뒤마을주공아파트)
216	05러7279	최*국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동 ****호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217	11거8863	천*록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만수동, 햇빛마을벽산아파트)
218	12오9318	김*덕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간석동, 인천간석** *단지)
219	77마3994	강*윤	2019-06-03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번길 **-, *층호(간석동)
220	91루1404	나*****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 ****호(부평동)
221	35허0426	최*현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 (도화동,미래홈타운)*차
222	03고7924	오*주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가동 ***호 (도화동, 대진빌라)
223	05나7102	임*규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224	25버0608	김*선	2019-05-16	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 ***동 ***호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25	70구2801	변*열	2019-05-16	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번길 **, ***호(도화동, 동성원룸)
226	70구2801	변*열	2019-05-20	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번길 **, ***호(도화동, 동성원룸)
227	08거1774	이*숙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만수동, 햇빛마을백산아파트)
228	52오5767	고*신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호(서창동, 정다운그린빌)
229	81라7562	정*숙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_** ***호(문학동, 스카이원룸)
230	인천30바8 945	김*원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동 ****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아파트)
231	인천30바8 619	이*금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 나동 ***호(가좌동, 공작아파트)
232	45버7525	장*철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번길 **, ***호(만수동, 삼화다세대주택)
233	54부2813	한*희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번길 ** *동 ***호(부평동, 성수빌라)
234	61고7500	권*진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호(주안동, 한진스카이다운)
235	64우4547	김*호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호(용현동, 아이원캐슬)
236	인천30바3 309	김*훈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동 ***호(용현동, 인천 ** ***)
237	23소8977	김*성	2019-06-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동 ***호(간석동, 탑클래스)
238	15마9484	박*호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번길 **, ***호(송의동, **리치뷰)
239	37마9888	주*영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번길 **_** ***호(만수동)
240	39다0291	강*운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_** , ***호(학익동, 성안원룸)
241	49머5497	이*선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 ***동 ***호(청학동, 하나아파트)
242	11수3839	김*순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동 ***호(연수동, 태산아파트)
243	28무4386	김*준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효성상아맨션)
244	인천32바2 399	김*영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번길 **_**(학익동)

245	10노6401	이*화	2019-05-20	5000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번길 **, ***동 ****호(신곡동, 신일*차아파트)
246	47구3563	김*희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번길 ** 나동 ***호(만수동, 동호다세대주택)
247	48서2844	박*준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 ***호(구월동, 하늘지움*차)
248	53나7363	강*석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번길 **, ***동 ***호(청라동, 청라동문굿모닝힐아파트)
249	60하9090	강*석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니스로**번길 **, ***동 ***호(청라동, 청라동문굿모닝힐아파트)
250	인천30바3 910	강*인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로**번길 **(석남동)
251	13마9855	오*석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 (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252	33어8130	김*수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 나동 ***호(간석동, 성지그린빌라)
253	50더2916	여*모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번길 **-, *동 ***호(옥련동, 현대힐타운)
254	07저5110	김*수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 ***동 ****호(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255	19우4142	이*주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도화동, 올레오)
256	21머7280	김*경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호 (구월동, 대원빌라)
257	24어6588	박*정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호(주안동, 청담팰리스)
258	인천30바3 712	김*산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
259	인천32다7 344	유*숙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 (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260	91버3641	강*욱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동 ****호(간석동, 한진아파트)
261	92마2402	신*수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번길 *-*, ***호(용현동, 미래주택)
262	12서8187	조*호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한흥아트빌)
263	15루8043	안*권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번길 **, ***동 ***호(작전동, 부민렉스타운아파트)

264	22노4675	이*설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서창동, 호반베르디움)
265	14무6789	전*진	2019-05-15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 **동 ***호 (삼산동, 삼산주공아파트)
266	05거8023	김*진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도화동, 하임스토리)
267	58주9415	윤*희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호 (주안동, 미송아파트)
268	51어8689	최*희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호(구월동, 뉴타운)
269	56너2217	유*순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동 ***호 (간석동, 신한아파트)
270	인천30바7 223	강*모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동 ***호(문학동, 태지빌라)
271	65저0455	최*길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주안동)
272	88두0864	안*헌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석남동)
273	45더2368	차*수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 (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274	68두5222	윤*호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호 (만수동, 동성그린타운)
275	인천30바9 698	한*수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말로**번길 **(청학동)
276	인천30바5 764	강*윤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 ***동 ***호(서창동,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277	인천30바5 324	김*권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_**, ***호(학익동, 제운빌라)
278	31호6955	강*역	2019-03-26	50000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 **동 ***호 (정왕동, 두산아파트)
279	62루3146	이*미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_* (만수동)
280	08주6989	김*철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번길 **, 가동 ***호(가정동, 성광아파트)
281	04모3767	오*백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호(주안동, 롯데하이츠빌)
282	45두9517	최*렬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동 ****호(간석동, 간석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283	50오2761	장*이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 ***동 ***호 (만수동, 삼환아파트)
284	73두7848	박*미	2019-05-31	6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번길 **-* ***호 (신가동)
285	93다6831	윤*섭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승로 **-, ***호(도화동, 현대캐슬)
286	01어1866	김*태	2019-06-11	50000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 ***동 ***호(조남동, 엘에이치포레하임)
287	14구5824	양*환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동 ***호(구월동, 희망아파트)
288	05버7799	조*영	2019-05-1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 , ***호(구월동, 미진빌라)
289	39호0965	한진**** ****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번길 **-* (도림동,그린캐슬) *동 ***호
290	02마5150	이*봉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91	37구3530	박*용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292	26서4611	김*기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번길 **, *동 ***호(송의동, 오엘세림빌)
293	01주6617	장*자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번길 **, *동 ****호(부평동, 블루밍아파트)
294	34우4353	유*열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번길 ** (주안동)
295	86수5949	이*민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번길 **, *동 ***호(주안동, 대림맨션)
296	67로6056	유*재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 ***호(간석동, 백조빌라)
297	34로4871	윤*이	2019-05-30	50000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 , ***동 ***호(정왕동, 계룡아파트)
298	30노1889	차*준	2019-05-22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길 **, ***동 ***호(동빙고동, 용산푸르지오파크타운)
299	35도5142	황*룡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 가동 ***호(효성동, 원익부자마을)
300	45로9380	김*우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동 ****호(구월동, 구월프라움시티)
301	24가5179	신*두	2019-05-1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302	인천30바8 619	이*금	2019-06-08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 나동 ***호(가좌동, 공작아파트)
303	인천30바3 712	김*산	2019-06-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 범마을)
304	67머2830	이*애	2019-06-0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번길 **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305	47도4737	장*우	2019-06-09	5000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 , ***동 ****호(코아루햇빛마을아파트)
306	89어6051	방*근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동 ****호 (원당동, 엘지원당자이아파트)
307	34부8019	김*식	2019-06-0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번길 ** (부개동)
308	91조2929	태*철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번길 ** ***호 (동춘동)
309	28나7828	김*정	2019-05-16	5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 ***동 ***호 (보미청광플러스원아파트)
310	22하1408	정*지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번길 **-* ***호 (주안동, 로엔그린)
311	57노2931	문*상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호 (구월동, 파라디아빌딩)
312	54두6355	김*화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호 (만수동, 진흥아트빌)
313	인천30바8 118	송*현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꿈에그린)
314	58하4447	이*도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 (간석동, 스마트리더스타운)
315	42우4480	서*범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_** ***호 (구월동, 수인빌라)
316	인천30바1 204	정*환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 ***동 ***호(송의동, 광해리드빌)
317	41러1383	서*원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번길 **-**, ***호(만수동, 성원빌라)
318	63조8211	오*주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 **, ***호(장수동, **빌리지)
319	13호7397	성*정	2019-04-05	50000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번길**, *동 ***호(주안동, 동인빌라)
320	06무9527	곽*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번길 * , ***호(간석동)

321	43도3390	조*행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 ****호(간석동, 대은주거복합아파트)
322	인천85바1 072	김*규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 호(주안동, 월드빌)
323	33모8787	이*시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 동 ***, 호(관교동, 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
324	39오6979	김*림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 마동 ***, 호(만수동, 아주아파트)
325	90로3812	이*경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번길 **, ***, 동 ***, 호(청라동, 청라풍림엑셀루타워)
326	인천82라6 125	김*남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 동 ***, 호(간석동, 간석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327	01오8310	김*욱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번길 **-* **, ***, 동 ***, 호(용현동, 백송빌라)
328	36소4131	이*복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번길 **, ***, 호(주안동, 삼화하이츠빌)
329	84우2829	박*우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 ***, 동 ***, 호(주안동, 이츠)
330	87나7781	가*국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 *동 ***, 호(주안동, 동인하이츠빌)
331	26보0344	황*분	2019-05-31	25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 동 ***, 호(학익동, 신동아아파트)
332	06버9437	이*재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 ***
333	14버3344	박*미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 동 ***,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334	06도6185	박*범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동 ***, 호(구월동, 삼환빌라)
335	65조5775	고*기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 *동 ***, 호(만수동, 신대동아파트)
336	12노4192	임*숙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번길 **, *동 ***, 호(원당동, 미래캐슬)
337	37너1465	정*수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층(만수동)
338	45다9222	김*수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 호(만수동, 부경홈타운)
339	54마7445	김*식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 **, *동 ***, 호(만수동, 아름다세대주택)

340	인천30바3 919	전*술	2019-05-1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번길 **, *동 ***호(만수동, 진흥아파트)
341	04버1261	양*직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만수동, 햇빛마을벽산아파트)
342	45나2918	SH***** ***** *****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_**, ***호(도화동, 한서베스트빌)
343	인천30바2 655	유*호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가동 ***호(학익동, 삼경아파트)
344	08로4313	박*팔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호(구월동, 중앙아파트)
345	34나1293	이*근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번길 *_* ***호 (연수동)
346	36부1339	이*택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길마로*번길 **_*(효성동)
347	43가1897	우*희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오로 **, *동 ***호(용현동, 동아아파트)
348	87부7716	박*용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_**, ***호(만수동, 반석하이츠빌라)
349	인천30바9 424	민*호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만수동, 한국아파트)
350	19버4727	조*경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동 ***호 (구월동, 현대탑스빌)
351	80가9633	강*주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북길***번길 ** *층 (주안동)
352	05조7566	이*미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 ***동 ***호(부개동, 현대아파트)
353	27러3001	김*대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354	11모5823	조*령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 **_* ***호 (연수동)
355	06부8037	오*임	2019-05-23	50000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번길 **_* *층 (신천동)
356	06부8037	오*임	2019-06-03	50000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번길 **_* *층 (신천동)
357	73수4818	김*자	2019-06-11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동 ***호 (만수동, 강남맨션)
358	25저4892	조*단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번길 **_* (십정동)

359	22고7319	김*정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간석동, 신승펠리시움)
360	56루8430	정*권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동 ***호(간석동)
361	55오0338	이*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 ***호(주안동, 현광아파트)
362	77러1355	박*만	2019-05-15	6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번길 * ***동 ***호 (송도동, 송도성지리벨루스**)
363	68마9250	유*연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364	58다2090	이*호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 *동 ***호(송현동, 송현아파트)
365	56더8217	이*희	2019-05-1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호(주안동, 남경빌라)
366	64마9206	엄*선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동 ***호(주안동, 광성아파트)
367	37무0277	김*태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번길 **,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상가)
368	06마7672	위*환	2019-06-10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나길 *, *층 ***호(봉천동, 정림빌라)
369	17부0289	임*순	2019-05-27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길 **, ***호(본오동)
370	53우0535	이*호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번길 *, *동 ***호(주안동, 주공빌라)
371	12버8023	김*호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 ***동 ***호 (연수동, 우주아파트)
372	51저1843	채*자	2019-06-0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 ***호(주안동, 도영빌라)
373	51모0826	노*송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호(구월동, 성진베스트빌)
374	38우1325	오*섭	2019-06-0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간석동)
375	24호5438	박*민	2019-06-0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북로 **-** ***호 (산곡동, 대산빌라)
376	55마1351	이*현	2019-06-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호(구월동, 희망오피스텔)
377	64라2048	양*영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번길 **, ***동 ***호(산곡동, 경남아파트)

378	22두5522	전*민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만수동, 햇빛마을벽산아파트)
379	42머8491	정*남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번길 *, ***동 ***호(부개동)
380	18저1013	김*수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동 ***호(청라동, 청라웰카운티**단지)
381	05마1943	이*석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 ***동 ***호(원당동, 원당*차금호어울림)
382	55오9329	정*식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번길 **-*, ***호(부평동, 삼성빌라)
383	19호7379	서*철	2019-05-0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길파로**번길 ** ***호 (주안동, 대양빌라)
384	46라0194	이*영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동 ***호 (부평동, 동아아파트)
385	15우0806	유*원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번길 *, ***호(도화동, 미추홀타워)
386	25구5915	문*	2019-05-24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 ****호(염리동, 삼부골든타워)
387	15오2929	박*래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 ***동 ****호(청라동, 청라골드클래스커널웨이)
388	25부8522	우*숙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동 ****호(부평동, 동아아파트)
389	18호0900	임*성	2019-06-0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번길 *-*, *동 ***호(신현동,대신빌리지)
390	37무3960	조*호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호(만수동, 캐슬로제)
391	15가3273	이*주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392	23우9085	이*석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층 ***호(구월동, 윤오피스텔)
393	39호0247	범원**** *	2019-05-27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 ***동 ****호 (구로동,보람쉬움아파트)
394	28무4537	윤*원	2019-05-1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간석동, 노블레스)
395	27부4587	임*주	2019-05-19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관창북로**번길 **, ***호(운남동, 유진빌)
396	17너0474	이*규	2019-05-19	50000	경기도 오산시 권동로*번길 *-**, ***호(권동)

397	16리5947	이국**** ****	2019-05-1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번길 **, ****호(부평동, 더프라임캐슬)
398	14어1412	김*희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 ***동 ****호(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단지)
399	40모2842	이*수	2019-05-18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군봉**길 **, 가동 ***호(봉천동, 효신빌라)
400	21보1583	김*지	2019-05-1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구월동)
401	66우5515	윤*선	2019-05-1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번길 **-* , *동 ***호(석남동, 남가빌라)
402	56다9001	(주*****)	2019-05-19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번길 **, 비동 ***호(항동*가, 다홍오피스)
403	09머6234	신*호	2019-06-10	5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번길 **-* (중양동)
404	69모9668	이*호	2019-05-27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번길 *-** , ***호(화정동)
405	59도9177	김*우	2019-06-06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동 ****호(연수동, 태산아파트)
406	52주9552	김*제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번길 *-* , ***호(경서동, 대연베스트빌)
407	36가3133	권*련	2019-06-09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길 ** (개봉동)
408	37모6722	민*주	2019-06-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번길 **, *동 ***호(만수동, 진흥아파트)
409	28머2953	조*상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 ***동 ****호(청라동, 청라한화꿈에그린)
410	43누0977	류*미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번길 **, ***동 ***호(경서동, 가이아상베르*차아파트)
411	인천32바1 372	최*수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동 ***호(주안동, 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
412	48모0387	김*욱	2019-05-29	5000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 *층
413	87도3679	강*선	2019-05-27	5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번길 **, ***호(장기동)
414	53다0252	황*성	2019-06-0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로 **, ***동 ***호(신현동, 루원시티센트럴타운)
415	86버8646	한*진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다동 ***호 (주안동, 광성아파트)

416	59어6117	김*경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동 ***호(학익동, 장미아파트)
417	52고1445	이*식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동 ***호(관교동, 쌍용아파트)
418	29머6302	김*나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번길 ** (송림동)
419	87오9420	김*준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로 **, ***동 ***호(가정동, 루원시티프라디움)
420	32소5151	전*분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 ***동 ****호(도화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421	48주4304	이*희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_**, *호(주안동)
422	26조2538	이*진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 ***호 (주안동, 스페이스이모션)
423	09고5064	최*주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 *동 ****호 (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424	72서9176	박*영	2019-05-22	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_**, ***호(부개동, 부개오피스텔)
425	인천32마3 255	김*식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동 ***호(구월동, 팬더아파트)
426	인천30바9 818	이*성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번길 **, **동 ***호(학익동, 신동아아파트)
427	16고6422	박*현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 ***동 ***호(십정동, 주공 트란채아파트)
428	08어1820	곽*은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동 ****호 (산곡동, 현대아파트)
429	87고8807	추*호	2019-05-22	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 ***동 ***호(풍동, 숲속마을)
430	56모6997	이*검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번길 **, ***동 ***호(산곡동, 우성아파트)
431	41버7717	유*환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번길 ** ***동 ***호 (경서동, 가이아상베르*차아파트)
432	49가9733	지*영	2019-05-24	50000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번길 **, ***동 ****호(월곶동, 진주마을풍림*차아이원아파트)
433	69노2819	허*신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동 ***호(만수동, 정석리치빌)
434	69누6212	윤*숙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 *동 ***호(간석동, 대창파크빌)

435	09수7315	박*우	2019-05-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서창동, 더포레스트)
436	37무3737	민*숙	2019-06-03	50000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번길 ** ***호 (도당동, 대원하이츠빌)
437	67수8896	김*업	2019-06-10	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물왕말로 **-** (인후동*가)
438	89너9469	김*석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동 ****호 (학익동, 엑슬루타워)
439	인천32바1 149	윤*의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동 ***호(학익동, 영남들국화아파트)
440	인천30바1 159	박*운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 ***호(십정동)
441	35마5168	민흥**** *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번길 *, ***동 ****호(마전동, 대주아파트)
442	61다3425	김*석	2019-06-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동 ***호(학익동, 태광빌라)
443	인천30바1 894	김*수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층동(구월동)
444	40버3836	양*석	2019-05-30	5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가길 *, ***호(목동, 등지빌라)
445	49모5902	이*구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가동 ***호(간석동, 정의빌라)
446	60로1014	김*영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호(간석동)
447	01부6820	고*곤	2019-06-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간석동, 세종빌리지)
448	52호6408	유*준	2019-05-0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 (부개동)
449	60나1833	한*희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동 ****호(간석동, 어울림마을아파트)
450	10누4101	(주*****)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층(주안동)
451	인천30바3 722	하*성	2017-03-1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동 ****호(청라동, 호반베르디움)
452	41가1227	김*자	2019-05-19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 ***동 ***호 (연수동, 우주아파트)
453	30나0704	이*희	2019-05-19	5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길 ***(온수동)
454	27루6687	김*현	2019-05-1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주안동)

455	인천32바2 189	정*완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 ***동 ****호(삼산동, 벽산블루밍아파트)
456	52우0902	이*민	2019-06-05	5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일길 **, 가동 ***호(선부동, 성원맨션)
457	65러9237	길*숙	2019-05-24	50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 *동 ***호(아름빌)
458	09구4659	최*석	2019-05-1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번길 **_* , ***호(송의동)
459	50루6719	신*철	2019-05-2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 *동 내제*층 ***호(석남동, 삼양연립)
460	41누7521	차 **	2019-05-1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_*(학익동)
461	22버1633	박*호	2019-05-1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서로**번길 ** ***호 (용현동, 서광맨션)
462	64소3186	정*비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463	인천30바3 204	조*남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별로***번길 *, ***동 ***호(효성동, 현대*차아파트)
464	57노2432	이*관	2019-05-30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캐슬&해모로)
465	63너7440	박*윤	2019-05-27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 ***동 ***호(운남동, 영종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
466	44호0568	황*기	2019-05-19	5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 ***동 ***호 (창신동, 엠아이디그린아파트)
467	46하8982	이*면	2019-05-25	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길 **_* (대림동)
468	인천30바4 452	손*석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 **, ***호(구월동, 대원빌라)
469	22누5834	정*영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번길 **, ***호(주안동, 동명뉴캐슬)
470	35나5383	박*열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논현동)
471	21가6376	안*경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동 ****호 (용현동, 인천 ** ***)
472	27머5622	김*희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473	13누1722	한*찬	2019-06-0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동 ***호(학익동, 신동아아파트)

474	56조0594	백*현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로 **, ***동 ***호(관교동, 풍림아파트)
475	06나2705	이*호	2019-06-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동 ***호(구월동, 동아아파트)
476	서울86자4 917	최*길	2019-06-01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길 **, *동 ***호(길동, 동성타운)
477	57노2590	명*식	2019-06-0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만수동, 해피트리)
478	24다7334	임*선	2019-06-0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번길 **, *동 ***호(만수동, 진흥아파트)
479	88두0882	조*국	2019-06-0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좌로*번길 **, *동 ***호(구월동, 테라스빌)
480	인천30바2 310	최*연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동 ****호(주안동, 신비마을아파트)
481	29거9303	이*아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번길 *, *동 ***호(석남동, 덕산아파트)
482	38호7520	정*야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도화동,도화한승미메이드)
483	인천86바8 695	이*구	2019-05-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만수동, 햇빛마을벽산아파트)
484	53다5665	김*훈	2019-05-2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 ***동 ***호 (삼산동, 엠코타운)
485	36저3952	배*구	2019-05-2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 ***호 (주안동, 삼미그랜드빌라)
486	56수1922	박*준	2019-06-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번길 *(용현동)
487	36서5284	유*찬	2019-06-0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 ***호 (부평동, 동수빌딩)
488	03두5441	김*태	2019-05-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호(구월동)
489	10루1927	황*진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동 ***호(구월동, 성문아파트)
490	16더0936	조*우	2019-05-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호(간석동, 리코팰리스)
491	87가8491	박*환	2019-06-13	500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 ***호
492	75우2201	이*환	2019-05-20	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번길 **, *동 ***호(부평동, 미도아파트)

493	52고3001	성*숙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동 ***호(산곡동, 삼성빌라)
494	인천30바1 140	원*서	2019-05-2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층선로 **-* , ***호(부평동, 시온베스트)
495	73보1008	정*자	2019-06-05	60000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번길 *-*(신현동)
496	20조6934	홍*운	2019-06-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층 ***호(구월동, 노빌리안*차)
497	서울영등포 자6907	이*자	2019-05-28	4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 (당산동*가,당산 삼성 래미안) ***동 ****호
498	26나5910	김*신	2019-05-2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번길 **-* , ***호(만수동, 캐슬로제)
499	55너2705	배*혜	2019-05-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번길 **(용현동)
500	40가9359	이*형	2019-06-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 ****동 ***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501	16고0904	남*원	2019-05-15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 ***호(부평동)
502	인천32바1 947	유*옥	2019-06-1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 *동 ***호(부개동, 삼가주택)
503	12오9972	박*대	2019-06-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호(간석동)
504	64버1120	장*정	2019-06-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동 ***호(주안동)
505	35두4470	신*선	2019-06-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오로 ** *동 ***호 (용현동, 동아아파트)
506	인천30바4 692	조*석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 ***동 ****호(간석동, 이삭아파트)
507	12소7475	장*영	2019-05-21	5000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 ***동 ****호(관저동, 원앙마을)
508	43가7349	황*현	2017-03-21	50000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 ***호 (문학동, 롯데탑스빌)
509	43가7349	황*현	2017-03-23	50000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 ***호 (문학동, 롯데탑스빌)
510	인천30바3 759	김*옥	2017-09-06	50000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번길 **-* (용현동)
511	인천30바8 278	엄*근	2019-05-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 ***동 ****호(관교동, 삼환아파트)
512	58조2969	정*숙	2019-06-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 *층(관교동)

513	31년5017	김*숙	2019-05-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514	41호2000	이*성	2019-04-07	5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호 (성남동,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

○ 공고기간 : 2019. 8. 19. ~ 2019. 9. 1.

○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032-440-8500, Fax 032-440-3929)

2019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8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영토건	신현복	2019. 8. 16.	인천190013	600,000,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 씨동 508호 (구월동, 구월테크노센터)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8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제320364호	주식회사 이씨스(ESSYS Co., Ltd.) 김용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55(송도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9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모집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9-6	(사)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112호	저소득 시각장애인 자립 및 수술비 등 재활프로그램 지원	30	전국	2019. 8. 20 2020. 8. 19 (1년)
						모집등록일 로부터 1년

※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담당관실 (☎032-440-33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4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대상업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7	경인해운항공(주)	이상용	인천광역시미추홀구미추홀대로599,4층(주안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9.4.9.)
46	한일인터내셔널(주)	최정숙	인천광역시중구인종로156(사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9.1.29.)
100	(주)글로지스	김현식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6번길98-11(운서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9.4.15.)
324	(주)가람해운항공	김백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아암대로29번길16,105동701호(용현동,인천용현엑슬루타워)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9.1.13.)
393	영우로지스틱(주)	정준하	인천광역시동구봉수대로98,비동223호(송림동,송림공구상가)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9.2.3.)
396	(주)퍼팩트해운(P.O.T)	이옥영	인천광역시연수구능허대로136,케이티연수지점별관2층(옥련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10.9.)
400	(주)세원물류	김병성	인천광역시서구경명대로496번안길16(경서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11.30.)
432	(주)다원글로벌	박훈	인천광역시동구방축로83번길23,13동305호(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11.6.)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19.1.12.)
439	한국자원물류(주)	김훈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토금북로11번길20,506호(용현동)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19.3.14.)
458	(주)삼일로지스틱	방병철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과학로27번길55,201동1517호(송도동,롯데캐슬캠퍼스타운)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10.16.)
507	(주)코스모로지스틱스	진재수	인천광역시중구인종로144번길70-1,1층(신흥동1가)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9.2.22.)

2. 예정된 행정처분 : 2차 위반 - 사업정지 30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안·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9월 11일 18:00 까지

-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410호 해양항만과 (송도동, 미추홀타워)

- 담당자 : 해양항만과 이환빈 (032-440-4843)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27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08.19. ~ 2019.09.02.(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19년 09월 30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9년 09월 30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3)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대상

연번	과태료 대장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우편물 송달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000464	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문학동,셋별주택)	좌 동	2019.06.05. 15:50.	계양구 서운동 아나지로	총중량17.65톤 초과(총중량40.65톤)	인천06아 ****	1,500,000	반송(폐문부재)	
2	000465	양**	인천광역시부평구 길주로 **** (청천동, 미가로아파트)	“	2019.06.05. 10:10.	계양구 서운동 아나지로	총중량16.90톤 초과(총중량39.90톤)	충남90사 ****	1,500,000	반송(폐문부재)	
3	000475	김**	경기도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세류동)		2019.06.11. 16:34.	미추홀구 도화동 석정로	폭0.25미터 초과(폭2.75미터)	경기07고 ****	300,000	반송(주소불명)	
4	000483	이**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관치말1길 ****		2019.06.12. 11:42.	서구 가좌동 백범로	길이2.90미터 초과(길이19.60미터)	전북99사 ****	300,000	반송(폐문부재)	
5	000497	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차성로 ****		2019.06.18. 14:44.	중구 향동 인중로(향동과적 검문소)	폭0.45미터 초과(폭2.95미터)	부산95아 ****	500,000	반송(폐문부재)	
6	000503	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48번길 ****		2019.06.19. 07:46.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로	폭0.25미터 초과(폭2.75미터)	서울90바 ****	300,000	반송(폐문부재)	
7	000505	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		2019.06.19. 08:45.	동구 만석동 인중로	축하중1.34톤 초과(4축하중11.34톤)	서울82바 ****	500,000	반송(폐문부재)	
8	000523	변**	인천광역시중구 인항로 **** (신흥동3가, 정광씨팰리스)		2019.06.26. 09:35.	중구 을목동 서해대로	축하중1.30톤 초과(3축하중11.30톤)	경기06조 ****	500,000	반송(수취인불명)	
9	000551	송**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48번길 ****		2019.07.04. 14:50.	서구 원당동 원당대로	축하중1.40톤 초과(3축하중11.40톤)	서울06하 ****	500,000	반송(수취인불명)	
10	000553	임**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		2019.07.04. 12:33.	중구 영종동 은하수로	폭0.35미터 초과(폭2.85미터)	경남99사 ****	500,000	반송(이사감)	
11	000557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용현동,대명빌라)		2019.07.05. 13:46.	중구 향동 인중로(향동과적 검문소)	폭0.29미터 초과(폭2.79미터)	서울87아 ****	300,000	반송(폐문부재)	
12	000560	이**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 (볼로동)		2019.07.08. 15:58.	중구 북성동 월미로	높이0.22미터 초과(높이4.22미터)	83저****	300,000	반송(이사감)	
13	000569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427번길 ****(연수동)		2019.07.12. 16:01.	중구 향동 인중로(향동과적 검문소)	축하중1.36톤 초과(1축하중11.36톤)	서울07가 ****	500,000	반송(폐문부재)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212호

공인등록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포함)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19.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재등록 및 폐기사유: 일반공인 자연마모에 따른 재등록
2. 재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사용시작일: 2019.09.03
3. 폐기공인 폐기일: 2019.09.03
3. 등록(전자이미지공인 포함)·폐기공인명 및 인영

가.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전자이미지공인명	규격	관리부서	인영
인천광역시남부 교육지원청 교육장인	2.4cm×2.4cm	학교운영지원과	

나. 등록공인

공인명	규격	관리부서	인영
인천광역시남부 교육지원청 교육장인	2.4cm×2.4cm	학교운영지원과	

다. 폐기공인

공인명	규격	관리부서	인 영
인천광역시남부 교육지원청 교육장인	2.4cm×2.4cm	학교운영지원과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55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8. 1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사항 중 ‘현금지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3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설

-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사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2 제4항에 의거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참조: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미추홀타워 18층)
투자유치과

(2) 연락처: 전화) 032-440-3282, FAX) 032-440-8631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관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6-0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2016-02-22>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4. "입지보조금"이란 특정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5.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6.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7. "시설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24>

제2장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업종 등

제3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 <삭제 2010-04-26>

제4조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삭제 2010-04-26>

제5조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삭제 2010-04-26>

제6조 (개발사업시행자) <삭제 2010-04-26>

제3장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등

제7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전문개정 2015-01-12>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기본계획
2. 이 조례 제11조, 제14조부터 제18조, 제21조,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7-11-12>
3. <삭제 2010-04-26>
4.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11-12, 2016-02-22>

제9조 (삭제) <삭제 2015-01-12>

제10조 (삭제) <삭제 2015-01-12>

제4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1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16-02-22>

제12조 (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4, 2013-07-29>

제13조 (금융지원) 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②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제14조 (입지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여타 투자를 희망하는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15조 (시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18조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개정 2011-10-24>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개정 2009-11-09> <개정 2011-10-24>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료 기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약국 <개정 2009-11-09, 2011-10-24>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과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24>

제19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제28조, 제38조, 제39조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 제32조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제2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의 사회기반 건설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16-02-22>

② 시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21조의2 (투자환경 조성) ① 시장은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3. 공장설립, 인가·허가 등 행정절차 One-Stop 서비스 제공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 (민간조직의 활용)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기반 시설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위원(단,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자문관, 외국인투자유치관련 전문가,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컨설팅수수료 및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에 따른 성과급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22>

제23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위원, 자문관,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2015-01-12, 제5436호>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조례 2016-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 (금융지원) 시 소재 외국인투자 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u><신 설></u></p>	<p>제13조(금융지원) ----- ----- ----- ----- ----- ----- -----.</p> <p><u>제13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u></p> <p><u>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 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u></p>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 촉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 제20조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 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5. 1. 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5>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②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이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4. 20.>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3. 11., 2014. 10. 15., 2018. 9. 18.>

1.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광역협력권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09. 7. 30.]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 및 지급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1. 총투자금액 및 내역
 2. 고용규모
 3. 기술과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09. 7. 30.]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 - 56호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19.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10 초과하지 않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책 명칭을 포괄적으로 변경 정비하고자 이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시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심의를 위해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11조)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 08. 05.)에 따른 부서장 명칭 포괄적 변경(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시민봉사과, 전화 : 440-29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시민봉사과)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 본청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환경정책·교통정책·도시계획 분야의 부서장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략)</p> <p>③ 시 본청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1.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한다.</p> <p>2. <u>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교통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환경정책과장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위촉한다.</u></p> <p>3.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p>	<p>제11조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좌동)</p> <p>1. (좌동)</p> <p>2. <u>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환경정책·교통정책·도시계획분야의 부서장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위촉한다.</u></p> <p>3. (좌동)</p>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 양성평등기본법</p> <p>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57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2016.8.4.)됨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나. 시민프로축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여 지역축구를 발전시키고 시민 여가 체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삭제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추가(안 제1조)

- 나.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장 (참조: 체육진흥과, 전화: 032-440-4077, 팩스: 032-440-8677, 이메일: lwm773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취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를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로 한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 을 “2022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스포츠산업진흥법」 <input type="radio"/> 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input type="checkbox"/>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input type="radio"/> 제13조 (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출연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특이사항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수·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익계약 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출연 등)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인용 법률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추가 신규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체육정책과장 백완근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58호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8. 16.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확대 및 권한 강화를 통한 수질감시체계 확립과 「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위임범위에 적합하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 시장에 권고 권한 부여(안 제2조)
- 나. 위원회 위원수 10 → 15명 이내로 규정(안 제3조)
- 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 당초 수도법에 정한 사항이 수도법시행령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이를 따르도록 정함(안 제3조)
- 라. 위원의 임기 중 해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마.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전화 : 032-720-2142, 전자우편 : 1037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요 수질 및 시설개선사항 시장에게 권고

제3조제1항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1호“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를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위촉 및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1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2호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인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지원을 이행하고 인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거사 피해주민의 정의 명시(안 제2조)

나.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제9조)

다.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결정통지, 지급청구,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소 :			
○성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거사 피해주민”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제10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지원금) ① 시장은 과거사 피해주민에 해당한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민법」 제1000조제1항

제1호 및 제1003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대표자 1명에게 지급한다.

③ 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급기간, 수령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결정통지) 시장은 위원회에서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청구) 지원대상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급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4조(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로 지급된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input type="checkbox"/> 「민법」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관련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 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92,800천원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 연간 2,800천원
 -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5조
-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30명 이내 예상 : 90,000천원
 -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이민우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3호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공공시설의 규모 및 방송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라. 시장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마.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소 :			
○성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 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이란 수화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m²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화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 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

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

준,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

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14조(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15조(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시행일 : 2021. 1. 16.] 제8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공공시설 중 바닥면적 300㎡ 이상 및 고정 관람석 300석 이상인 공연장·관람장 등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자막시스템, 수화통역전용 스크린) 설치
 - 자막시스템·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4대 설치(이동식 포함)
 - * 산출내역 : 15백만원×4대 = 60백만원
 - 실시간 속기사 및 수화통역사 인건비
 - * 산출내역 : 0.6백만원×2시간×4개소×4회 = 19.2백만원(속기사)
 - 0.2백만원×2시간×4개소×4회 = 6.4백만원(수화통역사)
- 시장 주관행사에 편의시설 미설치된 경우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 제공
 - 수화통역사 인건비
 - * 산출내역 : 0.1백만원×2시간×50회 = 10백만원
- 향후 5년간 소요예산 추정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비고
합계	238	95.6	35.6	35.6	35.6	35.6	
자막시스템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 설치	188	85.6	25.6	25.6	25.6	25.6	운영비 포함
청각장애인 수화서비스 제공	50	10	10	10	10	1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시 재정수반 요인이 있어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4호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나.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라.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기관 등을 노인 친화 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활용)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등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시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기관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장은 공정한 절차 및 심사

를 거쳐 인증하여야 하며, 인증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인증 받은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취소) 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9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input type="checkbox"/>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4. 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5.][시행일 2019. 7. 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8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계	0	80,000	50,000	50,000	80,000	260,000
실태조사		30,000			30,000	60,000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4. 작성자

복지국 노인정책과 윤병석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5호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규정함(안 제5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5,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ohyer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내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

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가 제4조를 위반 하거나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 또는 약사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비용추계서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5조(사업비의 보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공심야약국은 2019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2021년부터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 2019년~2020년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은 민간경상보조사업(시비 100%)으로 추진하고, 2021년 이후부터는 10개소로 확대 하면서 군구 보조사업(시비 50%, 군구비 50%)으로 추진하고자 함.
-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비용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 운영 약국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근무약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여 운영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함.
 - ※ 지원운영시간 : 3시간(22시부터 익일 01시)
 - ※ 지원단가 : 광역시 단기채용약사 파트타임 시급단가(3만원) 적용
-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2019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계 기간은 2019.7월부터 2022년으로 하고,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예정임.

나. 추계 결과

- 공공심야야국 운영 사업은 2019년 50,910천원이 소요되고, 2022년까지 876,660천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산출내역

(단위 : 원)

시행연도	인건비		사무관리비	총 계	재원
	산출기초	금액			
2019년	30,000원*3시간*183일*3개소	49,410,000	1,500,000	50,910,000	시 100
2020년	30,000원*3시간*365일*5개소	164,250,000	1,500,000	165,750,000	시 100
2021년	30,000원*3시간*365일*10개소	328,500,000	1,500,000	330,000,000	시50 군구50
2022년	30,000원*3시간*365일*10개소	328,500,000	1,500,000	330,000,000	시50 군구50
총 계		870,660,000	6,000,000	876,660,000	

- ☞ 2019년 운영일은 시행 시기 고려하여 7.1~12.31일(183일) 기간 산정
- ☞ 지원운영시간 : 3시간(22시부터 익일 01시)
- ☞ 지원단가 : 광역시단위 단기채용약사 파트타임 시급단가(3만원) 적용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2019년~2020년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시비 100%)으로 추진하고, 2021년 이후부터는 10개소로 확대하면서 군구 보조사업(시비 50%, 군구비 50%)으로 추진하고자 함.

4. 작성자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 △△△△			해 당	없 음		
	소계						
세출	공공심야 약국운영	50,910	165,750	330,000	330,000	330,000	1,206,660
	소계						
재원 조달		시비 100%	시비 100%	시비50% 군구비50%	시비50% 군구비50%	시비50% 군구비50%	시비50% 군구비50%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50,910	165,750	330,000	330,000	330,000	1,206,660
	일반회계	50,910	165,750	165,000	165,000	165,000	711,66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165,000	165,000	165,000	495,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6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강화읍 도심외곽 등 관리지역에 60m²이하 소형공동주택의 건립이 많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세대당 0.7대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및 주차난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증가하는 관리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하고,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별표 2)

- 관리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하게 세대(호실)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7,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a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건축심의신청,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신청한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건축심의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1. 위탁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시설면적/70㎡)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시설면적/134㎡)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3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신축하는 제3호 시설물(숙박시설 제외)에 한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1 + {(시설면적 - 150㎡)/100㎡}]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1 + {(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하고,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시 설 물	설 치 기 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홀의 수×15)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타석의 수÷0.7)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정원/10명)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정원/70명)	골프장: 1홀당 10대 (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삭제>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9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삭제>
8.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4.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15. 위 표 설치기준의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및 구역을 말하며, 관리지역은 제15조제4항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구 분	현 행	개정안
제15조 제1항 [별표2]시설물 5. 관리지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다가구 및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호실)를 1세대로 본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input type="radio"/> 제27조(주차장)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전용 면적: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가. 특별시	나. 광역시·특별 자치시 및 수 도권 내의 시 지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 과 수도권 내 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B5 이하	1/75	1/85	1/95	1/110
B5 초과	1/65	1/70	1/75	1/85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2013. 3. 23.>

⑥ 삭제

⑦ 삭제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공공기관에 매입임대주택 매각 약정하고 미 매각 시 임대운영 계획에 의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발생될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 등 사업예산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공공기관에 매입임대주택 매각 약정하고 미 매각 시 임대운영 계획에 의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의한 문제발생 변수가 많아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성사업 등 투입될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교통국 교통관리과장 김영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7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급수공사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 처리에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나. 공동주택인 기숙사를 가정용 업종으로 변경하여 요금 부과의 형평성 제고
- 다. 상수도 검침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19. 6. 21.)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라.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

2. 주요내용

- 가. 급수공사 신청서의 처리 및 비용산출에 대해 명확히 규정(안 제6조)
- 나.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조문 수정(안 제16조)

- 다. 급수설비 폐전의 요건을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 도모(안 제26조)
- 라. 기숙사에 대하여 사용 수량 인정 근거 마련(안 제29조)
- 마. 오염된 수돗물 발생 시 주요거점에 자동제어밸브 설치(안 제41조의4)
- 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임의 행정처분 규정 삭제(안 제4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4, 팩스 440-8765, 이메일 shyy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나. 신규 조문 대비표 1부.
-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범위와 요건은”을 “설치대상과 설치비용 면제요건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 제3항 제3호 중 “단독주택으로”를 “제19조제2항에 적합해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을”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세대별 정액금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중 “단일계량기”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수도 관계직원(검침원 포함)”을 “수도관계직원”으로 한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급수 자동드레인 설비 설치)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급수과정별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 기준 초과지점 등에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급수를 “도용한”을 “몰래쓴”으로 하며, 제4호 중 “수도계량기”를 “수도계량기(설치 봉인 포함)”으로, 제5호 중 “무단 개전한”을 “무단으로 사용한”으로 한다.

제47조 중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를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을 “검침, 점검 및 교체, 고지서 송달업무 등을 민간”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본문 중 “요금, 연체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를 “요금 등”으로 하고, “징수예”를 “부과·징수예”로 한다.

제53조제2항의 본문 내용 중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40조의 요금 등의 감면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제17호를 제18호로, 제18호를 제19호로, 제19호를 제20호로, 제20호를 제21호, 제21호를 제22호로, 제22호를 제23호로, 제23호를 제24호”로 한다.

별표 3,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안>

업종별구분표(제29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 10m ² 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4. <u>기숙사</u>
일반용	1.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 사설소화전사용량, 각종 공사시 출수량,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욕탕용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춘 목욕장업(제2호 또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3.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별표 5] <개정안>

과태료처분기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자
1. 급수 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3.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5. 사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 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6.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 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7.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
제16조(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을 면제 할 수 있으며, <u>그 범위와 요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 1. (생략)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주택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④ (생략)	제16조(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그 설치 대상과 설치비용 면제요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 3. (삭제)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p> <p>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u>단독주택으로</u> 신축하고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4. (생략)</p> <p>5. (생략)</p> <p>④ (신설)</p>	<p>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 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 -----, 다만 <u>제19조제2항에</u> <u>적합해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u> <u>여 건축물을 신축</u>----- -----.</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u> <u>존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세</u> <u>대별 정액금을 적용받는 건축물</u> <u>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차액을</u> <u>납부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p> <p>① (생 략)</p> <p>②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u>단일계량기</u>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p> <p>③ ~ ④ (생 략)</p> <p><u><신 설></u></p>	<p>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u>1개의 수도계량기</u>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u>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2조 ① ~ ③ (생 략)</p> <p>④ <u>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나 수도 관계직원(검침원 포함)이 시험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p> <p><u><신 설></u></p>	<p>제32조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수도관계직원</u>이 ----- ----- ----- .</p>
	<p>제41조의4(급수 자동드레인 설비설치)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급수과정별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 기준 초과지점 등에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u>요금, 연체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u>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u>징수의 예</u>에 의한다.</p> <p>제53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 및 제20호에 관한 권한은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도 위임한다. 1. ~ 15. (생략) <u><신설></u> 16. ~ 23. (생략)</p>	<p>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 ----- -----<u>검침, 점검 및 교체, 고지서 송달업무 등을</u> <u>민간에</u> 위탁할 수 있다.</p> <p>제5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u>요금</u>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u>부과·징수의 예</u>에 의한다.</p> <p>제5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제5호 및 <u>제21호</u>에 관한 ----- ----- 1. ~ 15. (현행과 같음) <u>16. 제40조의 요금 등의 감면</u> <u>17. (현행 16호와 같음)</u> <u>18. (현행 17호와 같음)</u> <u>19. (현행 18호와 같음)</u> <u>20. (현행 19호와 같음)</u> <u>21. (현행 20호와 같음)</u> <u>22. (현행 21호와 같음)</u> <u>23. (현행 22호와 같음)</u> <u>24. (현행 23호와 같음)</u></p>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관련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2017.12.26>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 건축법시행령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협회 또는 검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 수도법시행령

제6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2.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기구등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도물의 공급 중지
3. 법 제14조의3 및 법 제14조의4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 3의2. 법 제14조의5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 3의3. 법 제14조의6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의 해제 접수 및 해제 결정
4.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 4의2. 법 제8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11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기숙사의 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할 경우, 부과 차액 발생에 따른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이재근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8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회의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기보전과(별표 1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비고란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다만, 계양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안 별표1)

2. 주요내용

- 대기보전과(별표 1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비고란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다만, 계양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안 별표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dalmalk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기보전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대 기 보 전 과	1	<p>「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p> <p>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의 수리</p> <p>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p> <p>다. 개선명령</p> <p>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p> <p>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p> <p>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p> <p>사. 과징금의 부과징수</p> <p>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p> <p>자. 환경기술인의 교육위탁</p> <p>차. 측정기구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합하게 운영·관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p> <p>카.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적정운영·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 정지명령</p> <p>타. 같은 법 제32조제5항 및 제33조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측정기기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접수</p> <p>파. 연료의 제조·공급·판매·사용 등의 규제</p> <p>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p> <p>거. 보고 및 검사</p> <p>너. 청문</p> <p>더. 과태료 등 부과·징수</p>	<p>「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p> <p>같은 법 제30조제1항</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4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제37조</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77조</p> <p>같은 법 제32조제5항</p> <p>같은 법 제32조제6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21조</p> <p>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p> <p>같은 법 제44조 및 제45조</p> <p>같은 법 제82조제1항</p> <p>같은 법 제85조</p> <p>같은 법 제92조 및 제94조</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u>일반산업단지</u>안의 <u>단지안</u>의 사업장 제외. <u>다만</u> <u>계양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u></p>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input type="checkbox"/> 「대기환경보전법」 <input type="checkbox"/>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관련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19. 7. 16.] 제30조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23.>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주기 및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신설 2012. 5. 23., 2015. 1. 20.>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시행일 : 2019. 7. 16.] 제32조

제3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33조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4., 2019. 1. 15.>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0.>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9. 1. 15.>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5. 23., 2016. 12. 27.>

⑦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⑧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8. 6., 2019. 1. 15.> [제목개정 2012. 2. 1.] [시행일 : 2019. 7. 16.] 제35조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9. 1.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지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1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20.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시행일 : 2019. 7. 16.] 제36조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2. 1.>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8. 6.,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⑥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액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시행일 : 2019. 7. 16.] 제37조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38조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5. 1. 20.>

1. 특별대책지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⑦ 시·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6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⑧ 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사설에 대하여도 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⑩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9. 1. 15.>

⑪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2019. 1. 15.>[시행일 : 2019. 7. 16.] 제44조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 27., 2019. 1. 15.>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 27., 2019. 1. 15.>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15.>[시행일 : 2019. 7. 16.] 제45조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

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1. 사업자

1의2. 삭제 <2017. 11. 28.>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12의3. 냉매회수업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2016. 1. 27., 2017. 11. 28., 2019. 4. 2.>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합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일 : 2020. 4. 3.] 제85조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9. 1. 15.>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3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3.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시행일 : 2019. 7. 16.] 제92조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7. 11. 28.>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 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10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합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합시정 현황 및 결합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합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7. 11. 28.>

1. 삭제 <2017. 11. 28.>

-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 2. 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⑤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7. 16., 2017. 11. 2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7. 11. 28.>[시행일 : 2019. 7. 16.] 제9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 나.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 다.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 평균한 값(이하 "30분 평균치"라 한다)으로 한다.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1.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1. 31.>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

- 나 방지사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사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사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9. 1.>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 9. 1.>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5. 9. 1.>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

③ 삭제 <2008. 12. 26.>

④ 삭제 <2008. 12. 26.>

⑤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2015. 9. 1.>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4. 6.]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의회사무처장, 시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6-07-31>
<개정 2008-2-25><개정 2015-5-26>

제2조 (위임사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3-10-13><개정 2015-5-26>

②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3-10-13><개정 2015-5-26>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88-04-30><개정 2015-5-26>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5-26>

[붙임 2]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 권한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안
 으로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 인 수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39호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회의장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영역 중 성과기반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음.
- 인천시도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출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재원조달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임.
-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IB를 인천시정에 도입·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사회성과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1조)
- 시장은 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보상사업 실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보상내용의 중요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의회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
- 보상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dalmalk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 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보와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보상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사회투자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 업무담당 부서의 보상사업 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상사업 실무단) 시장은 보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상사업 활성화

를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의 관계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보상사업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14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계약의 내용)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사업비 및 산출내역
7.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8. 사업비 조달계획
9.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0. 사회성과 평가기준, 방법, 시기
11.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평가기관 선정) 시장은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성과보상)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단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p>□ 「지방자치법」</p>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p> <p>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p> <p>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제11조)
-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 선정 (안 제16조)
-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 (안 제1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상계약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어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인수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40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수입금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과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를 위해 인천광역시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
-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 표준회계처리 및 정산보고 등 총괄 결산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
-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 및 매년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
-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 등에 대한 처리, 준공영제 제외 및 준공영제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
-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7,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a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운송수입금이며, 요금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

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경영 및 서비스평가”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6.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이란 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준공영제 시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준공영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대중교통 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운송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준공영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운송사업자의 책무) ①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제7조(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준공영제 운송수입금의 관리, 배분

2. 준공영제 운송수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정지원 신청

3.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 공동계정 관리·운영

4. 준공영제 버스광고 및 부대사업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

5. 운송사업자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검사

6.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7.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8. 시가 위임하는 성과평가 관련 업무

9. 기타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10조(사무기구)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재정지원 등

제13조(표준운송원가의 산정) ① 시장은 3년 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운송원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물가상승 등의 변동요인을 반

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 지원) ① 위원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세부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표준회계처리) ① 시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시스템을 운용하지 않거나 회계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유보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④ 준공영제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한 매회계년도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해당 운송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개) 시장은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1회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감독

제18조(회계감사) ① 시장은 재정지원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 준수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 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의 범위, 절차, 적용기준 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제19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과이윤을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제외)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제21조(조사·검사 등) ① 시장은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확인,

현장조사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 재정 지원 전반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제22조(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처리)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수금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제23조(준공영제 제외)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준공영제 중지) 시장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천재지변 등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합의하여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면허관리, 정산관리,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의 운영을 위하여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

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운행 방안) ①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전자에게 저상버스 등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이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및 버스정류소 관리를 운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치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1조(공동운수협정) ○ 제50조(재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15조(재정 지원) ① 위원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운송 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32개사 156개노선 1,861대를 운영함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총운송원가에 대하여 총수입액의 부족액 전액을 지원한다.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인건비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정상적 경비로 추계 한다.

나. 추계 결과

-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운송비용 대비 적자액 지원으로 향후 5년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액은 850,798백만원 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재원조달방안

- 당해연도 본예산 및 추경에 시비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노광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준공영제 재정지원	127,200	156,682	179,019	188,610	199,287	850,798
	소계	127,200	156,682	179,019	188,610	199,287	850,798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27,200	156,682	179,019	188,610	199,287	850,798
	일반회계	127,200	156,682	179,019	188,610	199,287	850,79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단) 요금 및 세입은 현재와 동일기준 적용

※ 운전직 인건비 : 확정 임금인상률('19년 노사 임금협약) 및 물가인상률 반영

-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 , 2022~2023년 전국평균임금인상률 3% 반영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의거 2020년 버스 대당 근무인원 조정 : 2.45명→2.65명

※ 표준운송원가 (운전직 인건비 제외) : 준공영제 이행협약서에 따름

- 2020년 1%, 2021년 2%, 2022년 동결, 2023년 1%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141호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2017. 12. 26.)으로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가능 범위가 도시지역 內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정면허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함(안 제12조)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선정방법, 공고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한정면허의 적용기준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추가 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7,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a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노선의 신설시에만”을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운행노선
 - 가. 운행노선
 -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운송사업자, 대상 노선 또는 구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장 <u>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u></p> <p>제12조 (한정면허의 기본원칙) ① (생략)</p> <p>②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영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u>노선의 신설시에만</u>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p> <p><u><신설></u></p> <p>제1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에 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p>	<p>제4장 <u>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u></p> <p>제12조 (한정면허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u> ----- -----</p> <p>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p> <p>제1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1. <u>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운행노선</u></p>

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운행노선
- 2. 운행대수
- 3. 서비스의 수준
- 4. 면허기간
- 5.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적용기준)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대상 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적용기준) -----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운송사업자, 대상 노선 또는 구역-----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제4조(면허 등)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4조(시·도시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input type="checkbo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7조(한정면허)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

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 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4. 삭제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
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
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5. 삭제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도에 걸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⑥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 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노 광 일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43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파브산업을 인천지역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협력대상 확대 및 수행조직을 강화하고
- 나.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파브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과 협력대상 확대함
(안 제5조)
- 나.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8조)
- 다. 파브산업 육성업무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6(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험 및 평가”를 “시험, 인증 및 평가”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파브산업의 인력양성”을 “파브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연구소 및 대학”을 “연구소, 기업 및 대학”으로 한다.

제7조 중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출자 및 투자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출연기관은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의 각 호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②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사는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

③ 시장은 제8조 제2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5조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 시장은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
원할 수 있다.

<신설>

----- 파브산업
을 추진하는 출연기관 및 기업
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출자 및 투자운영) ① 제7
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출연기
관은 파브산업 육성과 우수 기
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
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
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
조 제1항의 각 호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
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
터

②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사는
파브산업을 추진하는 기업 중
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에 투자한다.

③ 시장은 제8조 제2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신설>

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5조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 시장은 파브산 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생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p> <p>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p>□ 중소기업창업 지원법</p> <p>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p>제19조의2(엑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①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엑셀러레이터가 등록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파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기 확보된 정부과제 국비와 매칭 시비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가비용은 없으나,
-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44 호

『인천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 월 16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지식재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대상을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 사업 까지 확대하고,
- 나. 인천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해 지식재산의 사업의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대상을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 사업까지 확대함(안 제7조)
- 나.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출자와 투자운영에 관한 조항을 추가
(안 제39조,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6.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2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각 호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의 각 호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엑셀러레이터

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제7장을 제8장으로 하며,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투자

39조를 41조로 40조를 42조로 하며, 39조 및 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지식재산 활성화 출자)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식재산센

터는 지식재산 우수 기업체의 성장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하여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40조(투자운영) ① 제39조에 따른 운영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체에 투자한다.

② 시장은 제40조 제1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13조의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②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7장(생략)</p> <p>제39조(생략)</p> <p>제40조(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장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투자</p> <p>제39조(지식재산 활성화 출자)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우수기업체의 성장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위하여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될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p> <p>제40조(투자운영) ① 제39조에 따른 운영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기업 중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체에 투자한다. ② 시장은 제40조 제1항의 완료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제13조의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8장(현행 제7장과 같음)</p> <p>제41조(현행 제39조와 같음)</p> <p>제42조(현행 제40조와 같음)</p>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p> <p>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p>□ 중소기업창업 지원법</p> <p>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p>제19조의2(엑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①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엑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는 기존에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명문화한 사항이며
- 개정조례안 제7장(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투자) 신설 부분은 현재 기결성된 투자조합 사업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 - 145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과 일본의 자국산 부품 소재의 수출 규제로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수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매년 종합계획 수립추진(안 제4조)
- 나. 수출 지원 사업에 재정지원 및 타 기관 및 단체와 공동협업사업 근거 마련(안 제5조 ~ 제6조)
- 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해외마케팅 지원관련 실태 조사(안 제7조)
- 라.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을 위하여 위탁 운영 추진(제 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6.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일련의 수출 지원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

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4. 해외마케팅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 기업광고 등 수출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계획
5.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수출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시책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협업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및 수출기반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통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협업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무역·통상 및 수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해외마케팅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 등을 위탁하여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필요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수출 진흥 및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또는 수출업체 등의 유공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본법」 <input type="checkbox"/> 「대외무역법」 <input type="checkbox"/> 「대외무역법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16.1.27.>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5. 그 밖에 무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현재 확보된 정부 국비와 시비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으나,
-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25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굴포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76번지
 - 면 적 : 일시점용 2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광역상수도 관로조사
 - 내 역 : 터파기 3.0m×9.0m(깊이 1.6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08.13.~2019.11.30.(점용기간, 공사기간 동일)